2024
6
Monthly Magazine
통권 247호

월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회계 세무 경영저널

경영박사

eAnSe.com 30분내 Q&A답글 ⊕ 즉답829-7575 010-2672-2250

Biz life partner, 온라인재경교육, e러닝, 전직원경영관리아카데미, CEO, CFO, CMO 등 경영진 휴대북, 관리자 점검표 · 실무자학습지

2024-6 세무회계경영저널 2024 개정세법 해설

이달의 특집

▪ 2024 개정세법 해설 (국세청)

▪ 최고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국세청)

[주요정보]

·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 (행정안전부)

· 잠자는 퇴직연금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고용노동부)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 (금융위원회)

안안세건회조계세법정인보

안세 회계법인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등록번호 영등포 라-0129 · 등록일 2003년 11월 11일 발행인겸편집인 : 이윤선
발행처 (주)안건조세정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41(신길동) 안세빌딩 1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건조세정보

안세회계법인

Anse, the Best Answer

829-7557
829-7555
eanse.com

ESG컨설팅과 인증,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설계자문, 기업가치평가

PA 전문	1 상장, 코스닥, 대기업의 내부회계 Private Accounting 전문 특화
회계감사	2 소속회계사 110명 + 세무직원 330명 = 성실한 440명 활동
세무대리	3 대형회계법인에서 10년 이상 경력의 숙련된 전공별 회계사
재무자문	4 2022년 매출액 650억원으로 196개 법인 중 10번째 규모
경영컨설팅	5 서울 핵심지역과 광역시 총 21개의 현지밀착 1시간내 사무소
회계기장	6 모두 업무기획·계약·현장실행·품질관리 전 공정 책임수행
창업지원	7 獨自創安(독립, 자율, 창업, 안전) 경영이념과 적법투명회계
가업승계	8 고객현장근무 중심, 사전문제예방 컨설팅 파견과 재택가능

담당회계사·재경컨설턴트 : 경리·재경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할 안세의 전국 사업본부의 소속 공인회계사 등과 분사무소 · 지점

자매회사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서울본사 (영등포)	829-7557 외부감사 · 세무대리 · 회계 · 기장 · 재무 · ESG컨설팅 · 기업가치평가 · IFRS 적용 · 변환 컨설팅 · 내부회계관리제도설계(Sox 서비스) · 금융자문 · 인수합병 M&A자문 · 품질관리심리실 · 준법감시인 · 재경본부운영 · 전문지식정보운영팀 대표이사 박윤종 · 등기이사 장용석 · 김형석 · 정 훈 · 유환철 등 75명 등기이사 파트너 / 심리실 : 손세정(준법감시인 겸 상근 심리역)

고경호 · 고두환 · 공희성 · 권창현 · 김경수 · 김봉수 · 김수범 · 김수영 · 김영근 · 김옥철 · 김종창 · 김준영 · 김준일 · 김형석 · 박규태 · 박기훈 · 박병준 · 박상현 · 박정열 · 박지은 · 배익권 · 송형곤 · 설찬수 · 양승민 · 오승혁 · 유진우 · 유지윤 · 윤형민 · 윤훈기 · 이만선 · 이미지 · 이사야 · 이승환 · 이원재 · 이종량 · 임정훈 · 제갈원구 · 조민기 · 조성민 · 조영우 · 진수미 · 최영진 · 최진강 · 표정협 · 한상표 · 홍상연 · 홍재권 · 황준호 · 허진영(변호사 : 준법지원역)

서초강남본부	070-7668-6865 강민우 · 곽영미 · 이현섭 · 배문호 · 최민욱 · 황준호 · 정호신 · 박지은		
강남금융본부	070-5101-1651 우성권 · 김용환 · 김수범 · 홍희빈 · 이혜리 · 강용희 · 김현단 · 선지우		
가산디지털분실	02-6011-5514 이남재 · 정헌 · 설찬수	강남지점	516-4199 윤봉진 · 장원택 · 김현민 + 3인
부산경남본부	051-322-8321 공병진 · 이동계 · 윤재훈 + 10인	서초지점	6245-7502 정 훈 · 김태경 · 라선희 + 10인
대전충청본부	042-525-5558 이상훈 · 김형진 · 정대환 + 10인	삼성지점	571-3700 정원용 · 임진호 · 안영호 + 4인
부산지점	051-819-3308 박지훈 · 이성태 · 김수영 + 5인	여의도지점	6959-2378 변남진 · 양용석 · 황창연 + 5인
부산중앙지점	051-714-7227 이형래 · 홍영표 · 김치현 + 7인	센트럴지점	2209-0710 유환철 · 유지윤 · 윤현철 + 4인
부산센텀지점	051-938-9677 이수영 · 허정식 · 이대건 + 2인	영등포지점	2633-9243 차병길 · 원영민 · 이원재 + 10인
경인지점	032-815-2641 심강수 · 이희곤 · 정영훈 + 4인	가산지점	2026-8838 조재형 · 허 근 · 고경환 + 3인
일산지점	031-817-4189 김종운 · 송주호 · 최민욱 + 2인	중소기업지원센터	312-2255 이익재 · 이준상 · 이승호
송도지점	032-715-5376 강우석 · 조승범 · 김성우 + 5인	품질관리팀	829-7555 박윤종 · 손세정 · 홍재권 · 김형석
특별자문역	유찬영 세무사, 홍현영 법무사, 이승환 노무사, 김재득 세무사, 김흥기 · 윤경만 · 박희원 · 이우목 · 이미경 경영지도사		

안세회계법인의 상장 · 대기업 PA(Private accounting) 업무 상세내역

안세회계법인은 거래소상장법인 코스닥상장회사 재벌집단 대기업그룹 다국적글로벌외투법인등의 내부회계협력자문 PA(Private accounting)회계재무경영자문 아웃소싱용역의 최선봉에서,기업내부재경실무자의 애로점을 최적해결하는 경력자중심 조직임 - 빅4등에서 7년차이상의 베테랑회계사가 소속되어 능동창업적 창조활동함.(02-829-7575)

1. ESG컨설팅 · 인증 상장회사 등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자문, 인증업무, 환경, 사회, 투명경영전략 설계 컨설팅

2. 가치평가 기업전체가치평가(DCF 등), 기업 1주당 주식가치평가, 전환사채의 주식 및 옵션 가치평가, 상환우선주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옵션가치평가, 사모ABL평가, 보유투자주식평가, 이항모형 스톡옵션평가, 고정자산손상평가, 지분증권평가, 영업권 등 무형자산평가, 주식손상평가(관계사, 종속회사), PBR·PER 이용한 주식가치평가, 타회계감사 제출용 매도가능증권평가, 투자기업의 분기별 공정가치평가, 해외자회사 주식평가, 타회사 인수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무담보채권평가,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평가, 특수관계인간 주식양수도평가, RCPS용 비상장주식평가, 비상장사의 영업권 평가, 무형자산손상검토, 사회적 가치서비스 창출자문(ESG)

3. 일반재무제표 매년도 재무제표 작성·지원용역, 현금흐름표와 주석작성, 내부경리실무자의 일손부족분 결산보조,원가회계와 제조원가계산.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명세서작성,원가관리와 제품별 공정별 원가계산과정의 엑셀정리집계,제조원가배부용 감가상각비계산과 생산원가반영후 최종결산재무제표작성, 반기재무제표작성, 기업인수합병영업권대가의 각 사업부 배부용역, 재무결산지원, 재무제표작성과정의 신속·고도화, 건설·조선 공사 등 진행율 검토, 분기·반기·연차 재무제표작성지원협력, 국가중앙행정 각부·지자체 등 결산지원업무, 공기업·공기관 결산지원용역

4. 내부회계분야 내부회계시스템 구축·설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구축 및 운영평가지원, 재무관리실태감사와 내부회계지원

5. K-IFRS 관련 국제회계자문 연간일정(평상시 회계쟁점자문, 질문의견서 작성, 분기재무·반기검토 작성지원, 결산마감과 재무제표·현금흐름표·주석 작성, 연결분개재무제표, 외감현장입회대응, 해외모기업 합산재무지원)

6. 외감 아닌 기타 인증업무 합의된 절차에 의한 실사업무, 사업비정산 검토감사, 임의감사, 조성원가추정계산, 연구비 위탁정산

7.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작성·지원·자문용역, 국내외 자회사 등의 내부거래이익 제거, 연결재무제표 기초이월잔액 검증

8. 사업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타당성보고서, 사업계획 미래현금흐름검토, 대규모 사업단지 개발지역·오피스텔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스타트업 지원

9. M&A 실사·조사 등 인수대상회사 실사, 내부 임직원 부정적발조사, 자산부채자본실사, 자산양수도거래의 외부평가

10. 화의·법정관리 등 각급 법원 회생조사위원, 회생신청 전반 컨설팅, 관리인 조사보고서의 재검토

11. 외국 · 해외 비지니스 감사보고서 영문번역, 해외투자와 자원개발자금 심사와 실사업무, USGAAP기준, 영문감사보고서

12. 기타 특수업무 기업의 금융감독원 특별심사 감리대응자문, 위탁수수료 예상가격 산정, 컨설팅사의 공기관 제출 인증서류 검토, 상장 코스닥사 사외이사취임, 세무고문, 내부감사(상근, 비상근), 회계 · 세무 · 경영분야 겸직가능, 상장사 등 내부 감사위원회 구성원 역할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 6

+교육 · 훈련강의저널
+CEO · CFO · 기업법무저널

www.eAnSe.com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은
고객회사와 기업재경실무자의
"명료한 세무판단",
"투명한 회계처리",
"효율적 경영활동"
에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회계법인이 연합하여
공동제작하는
회계·세무·재경 전문야의
정보·자료전략컨설팅지
입니다.

이 달의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 법인이 지급하는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비교 ····· 2
· 개인소득 원천징수세율과 세금적용 과표 계산방법 ····· 3
·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요건인 창업이란 뭘까요? ····· 4
· 배당소득의 범위와 배당차액계산방법 ····· 5

이달의 특집

· 2024 개정세법 해설 (국세청) ····· 6
· 중소 · 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국세청) ····· 92

세무정보

·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 (행정안전부) ····· 132

노무정보

· 잠자는 퇴직연금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고용노동부) ····· 136

경영정보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 (금융위원회) ····· 138

· 부가세영세율과표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 · 재정 환율 (4월) ····· 144

6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10(월)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신고납부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20(목)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민감한 회계조세전략

핵심 point

안세재경저널

⊙ 법인이 지급하는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비교

- 안세재경저널 2024/5/8일자 통권 1674호

개념구분	사업소득	이자소득
개념정의 관련규정	각종 사업행위소득(소득세법 제19조) 영리목적 자기계산 하의 계속, 반복적 행위 활동소득	각종 금융자본소득(소득세법 제16조) 금전사용의 대가성격, 비영업대금의 이익
특성구분	적극적 행위실적소득 active	소극적 금전제공이익 passive
지급상황 판단	소득자의 특정업무, 행위, 활동, 실적과 직접 연관됨 (통장에 실적소득으로 기재함)	소득자의 금전행위(가수금, 예금, 예수금, 보증금 등)와 직 · 간접 연관됨(통장, 전표 등에 이자배당으로 기재)
소득자 특성	영업담당자, 다수인, 단기업무	대주주, 경영진, 자금제공전주
지급자 원천징수	총지급액의 3.3%	총지급액의 27.5%(25%×1.1)
회계처리계정	판관비 중 지급수수료, 판매수당, 영업실적보수	영업외비용 중 지급이자 계정
수취자의 소득계산	총 수취액 – 실제 필요경비 (또는 기준경비, 단순경비)	총 수취액이 소득금액임 (대응비용, 관련경비 인정 안됨)
최종 납세부담정도	실제소요경비 대응으로 낮은 편 (3.3% 일부가 환급되기도 함)	대응경비 없이 고율 과세, 금융소득 합산과세 대상이며 다단계 세율 적용 후 25% 선납세액은 차감 공제됨)

⊙ 개인소득 원천징수세율과 세금적용 과표 계산방법

- 안세재경저널 2024/5/15일자 통권 1675호

소득종류	과세가격,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	적용세율×1.1
근로소득	매월, 연 총액에 근로소득 공제, 가족공제 등	기본세율 (6~45%) * P.8 참고
일용근로소득	매일당 : 150,000차감공제 후 매일계산	단일 6%×45%
퇴직소득	총 퇴직금 : 연분연승법 공제 등 적용	기본세율
사업소득	자유직업 사업소득 총액에 적용(소득자 실비)	단일 3% 세율
봉사료	음식값 이외 별도의 팁에 부과(공제 없음)	단일 5%
기타소득	특허 산업재산권, 저작권, 일시강연 등 총액의 40%에 적용	단일 20%
종교인 소득	종교인의 총급여 : 높은 소득공제(80%, 50%, 30% 등)	기본세율
일반이자	이자총액에 과세	단일 14%
비영업대금	비금융회사의 자금대여소득 등 총액	단일 25%
배당소득	개인이 받는 배당액(법인은 적용제외)	단일 14%
비실명 금융소득	실지명의 미확인, 금융실명법 위반 등	45%, 90%

⊙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요건인 창업이란 뭘까요?

- 안세재경저널 2024/5/22일자 통권 1676호

<table>
<tr><th colspan="2">개념, 구분</th><th>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방법, 요건 등(조특법 제6조)</th></tr>
<tr><td colspan="2">세액감면
계산방법
(5년간 법인세,
소득세의 100%
또는 50% 감면)</td><td>① 중소기업 창업시 처음 5년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 적용함
(감면액 = 이익 · 소득×세율×(100% : 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
50% : 과밀억제권역 내 청년창업과 과밀억제권역 외 일반창업, 창업보육센터 등)
② 창업벤처중소기업 : 처음 5년간 소득의 법인세, 소득세×50% 감면</td></tr>
<tr><td colspan="2">해당업종</td><td>대부분의 제조업 등, 광업 · 건설업, 유통 도 · 소매, 물류산업, 음식점업 등, 기술서비스업 등(제외 : 부동산임대업,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수의사 등)</td></tr>
<tr><td rowspan="2">창업</td><td>새사업
최초 개시</td><td>기존 사업 유지하면서 다른조직, 다른 장소에 신규사업은 창업임(둘다 번성)</td></tr>
<tr><td>사업분리,
임직원 개시</td><td>기존 사업의 일부 분리 설립하면서, 해당회사 임직원이 사업분리 후 실질 대표자로 별도운영 등</td></tr>
<tr><td rowspan="4">창
업
아
닌
경
우</td><td>합병 · 분할 등</td><td>합병 · 분할 · 현물출자 · 사업양수로 기존 사업의 50% 이상 승계, 인수, 매입 등(50% 미만 인수는 창업임)</td></tr>
<tr><td>개인사업
법인전환</td><td>기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td></tr>
<tr><td>폐업 후
재개업</td><td>폐업 후 개시,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td></tr>
<tr><td>사업확장
업종추가</td><td>사업 확장이나 기존사업의 추가 등과 같이 새로운 사업의 최초개시가 아닌 경우</td></tr>
<tr><td colspan="2">창업의 판단
유권해석 등
(1인
복수창업감면됨)</td><td>개인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 설립하여 동일업종 영위도 창업임
(법인 대표자가 다른 지역에 개인사업 새로 개시해도 창업임) : 기존 사업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창업 아님.
기존사업자의 사업 일부나 전부승계 운영이나 사업창출 효과 없으면 창업 아님. 개인 폐업 후 동일업종 법인설립시 창업아님. 여러개 법인을 연접 다른장소에 설립해도 창업임. (그러나, 연접장소의 인적 · 물적설비 승계하면 창업 아님)</td></tr>
</table>

⊙ 배당소득의 범위와 배당차액계산방법

- 안세재경저널 2024/5/29일자 통권 1677호

개념, 유형	구체적 범위, 계산방법, 과세 제외
배당금	잉여금 배당, 분배금, 의제배당, 배당처분액, 펀드이익, 해외이익, 공동출자자분배금 등
감자차익 등	주식소각, 자본감소, 퇴사, 출자감소시 받는 금전 – 해당주식취득 사용실제금액
무상증자이익	법인잉여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취득하는 금액(제외 : 상법상 자본준비금(주발초 등)과 재평가적립금) 단 토지 재평가 차익 적립금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됨
해산분배이익	해산법인의 주주 등의 잔여재산 분배금전⊖해당주식의 투자원금 (단, 상법, 특별법, 기타법률상의 조직변경은 제외함)
합병소멸이익	합병소멸법인 주주 등의 금전가액⊖해당 소멸법인 주식취득원금
불균등증자이익	법인증자시 해당법인 외의 주주지분비율이 증가한 해당액
분할법인주주이익	분할시 취득하는 분할대가(주식가액 + 금전 + 그 밖의 재산가액 합계) – 해당주식취득가액 등
배당소득총액가산	일반배당금액×11%(100분의 11)을 배당금액 가산하여 종소과세

이달의 특 집

2024 개정세법 해설

– 국세청 –

소득세법(종합소득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출산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 사업자 본인의 고용 · 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933호) : 2023.12.3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4265호) : 2024.2.29. 공포

01.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5)

가. 개정취지

○ 양식업계 경영애로 해소, 유사 업종간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 (소득구분) 농어가부업소득* * 축산·고공품제조·민박·특산물제조·양어소득 등 ○ (비과세 한도) 3,000만원 – 다른 농어가부업소득과 합산	▢소득구분 변경 및 비과세 한도 상향 ○ 어업소득* * 어로어업·양식어업 소득 ○ 3,000만원 → 5,000만원 – 어업소득 합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2.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가. 개정취지

○ 육아휴직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 · 수당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추 가>	▢ 비과세 소득 확대 ○ (좌 동)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0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가. 개정취지

○ 출산 · 양육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 · 보육수당 ○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한도) 월 10만원	▢ 비과세 한도 상향 ○ (좌 동) ○ 월 2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04.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8조)

가. 개정취지

○ 기술개발 유인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 ○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 「발명진흥법」§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신 설>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❶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❷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3⑦에 따른 지배주주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05.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소득세법 제14조)

가. 개정취지

○ 노후생활 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금소득 분리과세 ○ (적용대상) 사적연금소득*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세율) 연령별 3~5% * (~69세) 5%, (70~79세) 4%, (80세~) 3% ○ (기준금액) 연간 1,2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좌 동) ○ (기준금액) 연간 1,500만원 이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6. 배당소득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소득세법 제17조)

가. 개정취지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❶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 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11% ❷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	▢ 배당가산율 조정 ○ (좌 동)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10%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07.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확대 및 소형주택 특례 연장

(소득세법 제25조)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 제고, 소형주택 임대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증금등 간주임대료 과세 ○ (대상)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추 가>	▢ 과세대상 확대 및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보증금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 (소형주택특례)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 *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적용기한) 2023.12.31.	○ 적용기한 연장 – 2026.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과세대상 확대)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08.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가. 개정취지

○ 서민 · 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공제한도) 300~1,800만원
<table>
<tr><th colspan="3">상환기간 15년 이상</th><th>상환기간
10년 이상</th></tr>
<tr><td>고정금리+
비거치식</td><td>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td><td>기타</td><td>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td></tr>
<tr><td>1,800만원</td><td>1,500만원</td><td>500만원</td><td>300만원</td></tr>
</table>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 이전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5억원 이하 주택 ·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추 가></td><td>▢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600~2,000만원
<table>
<tr><th colspan="3">상환기간 15년 이상</th><th>상환기간
10년 이상</th></tr>
<tr><td>고정금리+
비거치식</td><td>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td><td>기타</td><td>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td></tr>
<tr><td>2,000만원</td><td>1,800만원</td><td>800만원</td><td>600만원</td></tr>
</table>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 적용 이전 범위 확대

○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td></tr>
</table>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제한도) 20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20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연장) 2024.1.1. 이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이전) 2024.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9.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소득세법 제59조의2)

가. 개정취지

○ 출산 · 보육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녀세액공제 ○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원 – 2명인 경우 :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공제대상) <추 가>	▢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손자녀 추가 ○ (공제액) – (좌 동) – 2명인 경우 : 35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공제대상) – 손자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제액 상향) 2024.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공제대상 추가) 2024.1.1.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 부터 적용

10.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 제4항)

가. 개정취지

○ 출산 · 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 · 치료 ·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좌 동)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원)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원)
<추 가>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 (공제율) 15%	○ (좌 동)
○ (공제한도)	
❶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 공제한도 미적용	❶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❷ ❶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❷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1.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세법 제59조의4)

가. 개정취지

○ 기부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신 설>	▢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 (좌 동) – 3천만원 초과 : 40%(2024.12.31.까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2.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

(소득세법 제81조의11, 같은 법(제19196호, 2022.12.31.) 부칙 제1항 제5호)

가. 개정취지

○ 원천징수의무자 납세 협력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시기 유예 ○ 상용근로소득 : 매월 ○ 시행시기 – 2024.1.1. 이후	▢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행 ○ (좌 동) ○ 시행시기 – 2026.1.1. 이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예외 신설

(소득세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의3)

가. 개정취지

○ 사업소득(인적용역 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원천징수세액 소액 부징수 ○ (내용)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음 ○ 적용 예외* * 세액이 소액이라도 예외없이 원천징수 – 이자소득 <추 가>	▢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 ○ (좌 동) – (좌 동) –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7.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소득세법 제16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가. 개정취지

○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명칭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의무 ○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 ○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 (좌 동)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5.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선원 · 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 일반 국외 근로자 : 월 100만원 ○ 외항선 ·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 월 300만원	▢ 비과세 한도 확대 ○ (좌 동) ○ 월 300만원 → 월 500만원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 공무원,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추 가>	–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5)에 따른 “행정직원”
○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직원	
<추 가>	– 산업인력공단의 직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16.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가. 개정취지

○ 과세 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 ○ 사택제공 이익 등 ○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 <신 설>	▢ 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 (좌 동)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❶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 ❷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종업원 * (법인령 §3⑦)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7.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가. 개정취지

○ 출산·보육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 중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임원이 아닌 근로자 등이 받는 사택 제공이익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 · 임차자금 저리대여 이익 ○ 근로자 등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 보장성보험 중 70만원 이하의 보험료 <추 가>	▢ 위탁보육료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 (좌 동)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 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②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영유아보육령 §5)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8.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가. 개정취지

○ 추징 및 반환 절차 간소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차액 추가납입 후 사후관리* * 납입 후 5년 이내에 종전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사례 발생 시 추가납입액을 연금계좌 불입액으로 보지 않음 ○ (추징)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 일반계좌에 납입되었다면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을 추징 ○ (반환) 추징 후 남은 수익과 주택차액원금 반환	▢ 사후관리 방식 변경 ○ 아래의 반환액을 연금외수령*으로 간주 *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의 경우 기타소득세(15%) 부과 ○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과 주택차액원금 반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반환하는 분부터 적용

19.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액 처리기준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보험모집인의 원천징수 및 소득세 산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액 처리 기준 ○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 금액에서 차감

20.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료 필요경비 산입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자영업자 등의 사회안전망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회보험료 관련 필요경비 범위 ○ 사용자 본인의 직장 · 지역 건강보험료 <추 가>	▢ 필요경비 산입 범위 확대 ○ (좌 동) ○ 사용자*본인의 고용 · 산재보험료 *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분부터 적용

21.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노조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일반기부금의 범위 * 공제율 :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 노동조합의 회계공시를 요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 (좌 동)
○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아래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되었을 것 Ⓐ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조합원 수 1,000명 이상으로 한정) Ⓑ 규약 등에 따라 Ⓐ가 납부받은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및 산하조직, 연합단체)
○ 교원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0.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2. 신탁금액에 대한 기부금 인정요건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다목)

가. 개정취지

○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 개정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신탁금액의 특수관계 요건 명확화
○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금 등 *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	○ (좌 동)
○ (좌 동)	
○ 아래 요건(❶+❷+❸+❹)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에 신탁한 금액	
❶ 위탁자 사망시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 ❷ 신탁설정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❸ 금전으로 신탁할 것	○ (좌 동)
❹ 위탁자가 ❶의 공익법인등과 舊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 주주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주주등이 비영리법인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함)	❹ 위탁자등*이 ❶의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그들중 1명이 설립자가 아닐 것 (위탁자등이 공익법인 등의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정) * 위탁자 + 위탁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23. 공익단체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기간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제5항)

가. 개정취지

○ 납세협력 비용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단체의 투명성 확보 의무	▢ 제출기한 연장
○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	○ 3개월 이내 → 4개월 이내
❶ 결산보고서 : 행정안전부장관 ❷ 수입명세서 : 관할 세무서장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4.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가. 개정취지

○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사업자의 기부금 지출시 필요경비 산입한도	▢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 및 순서 규정
○ (정치자금 및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전 소득금액	○ 고향사랑기부금 추가 – (좌 동)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3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30%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30% *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30% *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5. 자원봉사용역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가. 개정취지

○ 자원봉사용역기부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특례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에 따른 특례기부금 ○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❶+❷) ❶ 봉사일수(=총봉사시간÷8) ×5만원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봉사분에 한정 ❷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단서 신설>	▢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용역기부 인정범위 조정 ○ (좌 동) ○ (좌 동) ❶ 5만원 → 8만원 – (좌 동) ❷ (좌 동) – 자원봉사용역 제공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6.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

가. 개정취지

○ 고령층 노후주거 안정 및 소득확보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이자비용 소득공제 ○ (공제대상 소득) 연금소득	▢ 소득공제 요건 완화 ○ (좌 동)

○ (대상주택)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 (한도) 연 200만원	○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액 기준과 동일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27.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4)

가. 개정취지

○ 신규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 (적용대상)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 ○ (공제금액) 발급 건수당 200원	▢ 적용대상 확대 ○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포함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8.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보고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 법인세법 시행령(제15970호, 1998.12.31.) 부칙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제18706호, 2005.2.19.) 부칙 제14조)

가. 개정취지

○ 농수산물 도매인에 대한 과표 양성화 유도

나. 개정내용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농수산물 중·시장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특례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도매인·시장도매인
○ 연도별 계산서 발급비율*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세 부과
* 해당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대비 계산서 발급·제출액의 비율
○ 계산서 발급비율(%)
<table><tr><td colspan="2">사업연도
지역</td><td>'19</td><td>'20~'21</td><td>'22~'23</td></tr><tr><td rowspan="2">중도매인</td><td>서울</td><td>85</td><td>90</td><td>95</td></tr><tr><td>서울 외</td><td>65</td><td>70</td><td>75</td></tr><tr><td colspan="2">시장도매인(법인)</td><td>85</td><td>90</td><td>95</td></tr></table>○ 적용기한 : 2023.12.31.까지</td><td>▢ 가산세 특례 기한 연장 및 계산서 발급 비율 조정
○ (좌 동)
○ 계산서 발급비율(%) 조정
<table><tr><td colspan="2">사업연도
지역</td><td>'19</td><td>'20~'21</td><td>'22~'23</td><td>'24~'25</td><td>'26</td></tr><tr><td rowspan="2">중도매인</td><td>서울</td><td>85</td><td>90</td><td colspan="3">95</td></tr><tr><td>서울 외</td><td>65</td><td>70</td><td>75</td><td>80</td><td>85</td></tr><tr><td colspan="2">시장도매인(법인)</td><td>85</td><td>90</td><td colspan="3">95</td></tr></table>○ 2026.12.31.까지</td></tr>
</table>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9. 의약품 조제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가. 개정취지

○ 사업소득(의료용역 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나. 개정내용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의료용역 대가(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약사의 조제용역 사업소득 중 의약품 가격은</td><td>▢ 원천징수 배제 대상 추가
○ (좌 동)
○ 의사가 직접 조제용역을 곱급*하는 경우에도</td></tr>
</table>

원천징수시 제외 <추 가>	의약품 가격은 원천징수 배제 *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약국 없는 지역에서 조제, 응급환자·입원환자 등에 대해 조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7.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0.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사유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

가. 개정취지

○ 매입자 권리보호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사유 ○ 사업자의 부도 · 폐업 ○ 공급계약의 해제 · 변경 ○ 그 밖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추 가>	▢ 발급사유 규정 추가 ○ (좌 동)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주소 등의 국외 이전 또는 행방불명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발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3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가. 개정취지

○ 자녀세액공제 확대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 자녀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정 및 확대 반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3.1.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

32. 소비자 상대업종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제3의2)

가. 개정취지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비자 상대업종 ○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99개 업종 <추 가>	▢ 대상 업종 추가 ○ (좌 동) ○ 애완동물 장묘 · 보호서비스업, 유사의료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제3의3)

가. 개정취지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❶ 변호사 등 전문직 ❷ 병 · 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❸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❹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도 · 소매업 ❺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125개 업종	▢ 의무발행대상 확대 ○ (좌 동)
<추 가>	○ 13개 업종* 추가 및 1개 업종 정정** * ① 여행사업, ②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③ 수영장운영업, ④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⑤ 실외경기장 운영업, ⑥ 실내경기장 운영업, ⑦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⑧ 볼링장운영업, ⑨ 스키장운영업, ⑩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⑪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⑫ 앰뷸런스 서비스업, ⑬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양도소득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 ○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 ○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기준 완화

【관계법령】

-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933호) : 2023.12.31. 공포
-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061호) : 2023.12.28. 공포
-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265호) : 2024.2.29. 공포

01.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소득세법 제88조, 제9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4)

가. 개정취지

○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 개념 ○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추 가>	□ '주택'개념 구체화(시설구조상 특성 반영) ○ (좌 동) –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 별도 설치

▢ 주택으로 용도변경(또는 주거용 사용)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 기간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자산 취득일 ~ 양도일 ②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보유기간을 '취득일 ~ 양도일'로 보아 공제액 산출 <신 설>	▢ 계산방법 합리화 ① 용도변경일(또는 주거용 사용일)로 기산일 변경 ② (좌 동) – 단, 용도변경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 ·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계산(❶ + ❷) ❶ (보유기간 공제율*)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 + 주택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공제율 * 최대 40% 적용 ❷ (거주기간 공제율) 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주택 개념 구체화)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용도변경 시 비과세 보유기간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20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2.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가. 개정취지

○ 1세대 여부에 대한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❶ 또는 ❷ 또는 ❸) ❶ 30세 이상인 경우 ❷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 (좌 동)

❸ 30세 미만인 미혼자의 경우(⇒ 가 + 나) 가. 소유 주택 · 토지를 관리 ·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 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❸ 소득 판정기준 구체화 가. (좌 동) 나. 12개월간 경상적 · 반복적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저작권 수입, 강연료 등 인적용역의 대가만 포함) 등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3.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 소득기준 구체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가. 개정취지

○ 세대 판정기준 구체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30세 미만 미혼자(미성년자 제외)를 1세대로 보는 소득기준*판정 시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 ❶ 사업소득, ❷ 근로소득, ❸ 기타소득, ❶~❸의 소득에 준하는 계속적 · 반복적 성격의 소득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소득을 합한 금액 1) 비과세소득, 필요경비 차감 2) 기타소득은 저작권 수입, 원고료, 강연료 등 포함

04.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보유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자산 취득일 ~ 양도일	▢ 계산방법 명확화 ○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또는 용도변경일) ~ 양도일

05.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2항, 제159조의4)

가. 개정취지

○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판정기준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 판정 방법 ❶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❷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 (좌 동) ⇒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 다음 순서에 따라 판정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③ 최연장자	▢ 판정기준 합리화 ⇒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판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6.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

(소득세법 제92조)

가. 개정취지

○ 일반 국민의 양도소득세 개략적 이해 제고

나. 개정내용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신 설>
※ 현행 조문에서는 과세표준 이후 양도소득세 계산과정에 대해서만 규정 중
(1)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 계산
(2)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 계산
(3)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계산</td><td>▢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
<table><tr><th>구 분</th><th>계 산</th></tr><tr><td>양도차익</td><td>양도가액 – 필요경비</td></tr><tr><td>양도소득금액</td><td>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td></tr><tr><td>양도소득 과세표준</td><td>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td></tr><tr><td>양도소득 산출세액</td><td>양도소득 과세표준×세율</td></tr><tr><td>양도소득 결정세액</td><td>양도소득 산출세액 – 감면세액</td></tr><tr><td>양도소득 총결정세액</td><td>양도소득 결정세액 + 가산세</td></tr></table></td></tr>
</table>

07.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기준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가. 개정취지

○ 주식시장 변동성 완화

나. 개정내용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대주주'에 대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등

▢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table><tr><th></th><th>지분율</th><th>보유금액</th></tr><tr><td>코스피</td><td>1%</td><td></td></tr><tr><td>코스닥</td><td>2%</td><td>10억원</td></tr><tr><td>코넥스</td><td>4%</td><td></td></tr></table></td><td>▢ ‘대주주'에 대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 (좌 동)

▢ 과세기준 완화
○ 보유금액 기준 인상 등
– (좌 동)
–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table><tr><th></th><th>지분율</th><th>보유금액</th></tr><tr><td>코스피</td><td>1%</td><td></td></tr><tr><td>코스닥</td><td>2%</td><td>50억원</td></tr><tr><td>코넥스</td><td>4%</td><td></td></tr></table></td></tr>
</table>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8.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소득세법 제97조의2)

가. 개정취지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table>
<tr><th>종 전</th><th>개 정</th></tr>
<tr><td>▢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계산
○ (취득가액) 증여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
○ (필요경비) 수증자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여세
<추 가></td><td>▢ 필요경비 합리화
○ (좌 동)
–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포함</td></tr>
</table>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9.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제167조의11)

가. 개정취지

○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대상	▢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 지방저가주택(주택 수에서도 제외)	○ (좌 동)
<추 가>	○ '24.1.10. ~ '25.12.31. 중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수에서도 제외) ❶ 소형 신축주택 (1)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2) 취득가액 :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3) 준공시점 : '24.1.10. ~ '5.12.31. (4) 주택유형 : 아파트 제외 ❷ 준공 후 미분양 주택 (1) 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2) 취득가액 : 6억원 이하 (3) 주택 소재지 : 비수도권
○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4.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5.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 (좌 동)

10. 소형 신축주택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확인절차 등 신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가. 개정취지

○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요건 구체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준공일 개념 명확화 ○ 「주택법」 상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 상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 소형 신축주택 과세특례 세부 요건* * 면적(전용 60㎡ 이하), 취득가액(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❶ (양도자) 사업주체, 분양사업자 또는 사업주체 · 분양사업자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시공자 ❷ (양수자)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 포함)을 최초로 체결한 자 ❸ 매매계약체결 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세부 요건* * 면적(전용 85㎡ 이하), 취득가액(6억원 이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❶ 상기 소형 신축주택의 ❶~❸ 요건 ❷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일 것 ❸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한 주택으로서 매매계약서에 준공 후 미분양 확인 날인을 받은 주택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❶ 양도자가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양도하는 주택의 준공 후 미분양 사실 확인을 요청 ❷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내역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주택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❸ 양도자는 ❷에 따라 날인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교부 ❹ 양수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 ❺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❷ · ❹에 따라 제출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검토하여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판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국제조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한-러 조세조약 위반 초과외국납부세액분 포함
○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설
○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
○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제출의무 부여

【관계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933호) : 2023.12.31. 공포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265호) : 2024.2.29. 공포

01.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한-러 조세조약 위반 초과외국납부세액분 포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가. 개정취지

○ 이중과세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	□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 제한세율을 초과 과세한 세액 포함

○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법인)세액(가산세 제외)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 면제 및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제외 <단서 추가>	○ (좌 동) – 단, 러시아가 비우호국과 조세조약이행을 중단하여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8.8. 이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부터 적용

02.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설

(소득세법 제156조의9 신설)

가. 개정취지

○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방식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 국외 증권·운용사가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 위해 국내증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 ○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시 소득지급자는 통합계좌 명의인에 대해 원천징수(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 면제 · 제한세율 미적용) ○ 원천징수 이후 조세조약상 비과세 · 면제 ·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03.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5항, 제156조의4 제2항, 제156조의6 제4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 보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경정청구 ○ (기한)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	▢ 경정청구 기한 변경 ○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국세기본법 §5의2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04. 국외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제출의무 부여

(소득세법 제164조의5 신설, 같은법 시행령 제216조의5 신설)

가. 개정취지

○ 외국법인 임직원등 소득파악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제출대상자)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 포함)의 사용자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 ▢(제출요건) ①내국법인 임직원 또는 ②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 ○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범위 – ❶ 내국법인 임직원인 경우 : 내국법인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한 외국법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45①(1) – ❷ 국내사업장 임직원인 경우 : 외국법인 본점 · 지점, 외국법인 주식 5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한 다른 외국법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45②(1), (2) ○ 주식매수선택권등의 정의 – 주식매수선택권(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또는 주식기준보상* * ❶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❷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 (제출자료) 주식매수선택권등 거래명세서 * 주식매수선택권등 부여·행사·지급내역, 행사·지급이익, 임직원 인적사항 등 ▢ (제출시기) 주식매수선택권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10일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법(법인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기준 규정
○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추가
○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

【관계법령】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930호) : 2023.12.31.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266호) : 2024.2.29. 공포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1호) : 2024.3.22. 공포

01. 신탁세제 합리화

(법인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2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가. 개정취지

○ 신탁재산 과세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탁소득 과세방식	▢ 과세체계 정비
○ (원칙) 수익자 과세	○ (좌 동)
○ (예외) 일정요건 하에서 수탁자 또는 위탁자 과세	
– (수탁자 과세) ❶~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과세 선택 가능	– ❶~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과세 적용
❶ ①~③에 해당하는 경우	❶ (좌 동)
* 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없는 경우(목적신탁) ② 「신탁법」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③ 유한책임신탁(사업신탁)	
❷ 수익자가 2 이상일 것	<삭 제>
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지 않을 것	❸ (좌 동)
– (위탁자 과세) ❶~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 동)
❶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삭 제>
❷ 수익자가 부존재하는 경우	<삭 제>
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❸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분부터 적용

02. 자본거래 과세 합리화

①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법상 자본준비금 자본전입 시 세무처리 ○ (원칙) 과세 제외 ○ (예외) ❶~❹를 자본전입 시 익금산입 ❶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❷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 *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 제외 ❸ 적격합병 시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다음 금액(합병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1% 재평가적립금 등) – 이익잉여금 ❹ 적격분할 시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다음 금액(분할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분할감자차익(1% 재평가적립금 등)	▢ 과세되는 의제배당 범위 확대 ○ (좌 동) ❺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 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금** *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 ** 발행가액 – 액면가액
<추 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02. 자본거래 과세 합리화

②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 합리화

(법인세법 제18조)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익금불산입(주식의 장부가액 한도)	▢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 (예외) ❶~❹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산입* *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과세 대상과 일치 ❶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❷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 *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 제외 ❸ 적격합병 시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다음 금액(합병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1% 재평가적립금 등) – 이익잉여금	○ (좌 동)
<추 가>	– 3% 재평가적립금
❹ 적격분할 시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다음 금액(분할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분할감자차익(1% 재평가적립금 등)	○ (좌 동)
○ (좌 동)	
<추 가>	– 3% 재평가적립금
<추 가>	❺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감액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02. 자본거래 과세 합리화

③ 합병·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 시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합병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한도금액 ○ 합병차익 – (❶ – ❷) ❶ 피합병법인의 자본금 및 의제배당비과세 자본잉여금(3% 재평가 적립금 제외)의 합계액 ❷ 합병에 따라 증가한 합병법인의 자본금 ▢ 분할차익에 포함된 3% 재평가적립금 감액배당 시 한도금액 ○ 분할차익 – (❶ – ❷) ❶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의제배당비과세 자본잉여금(3% 재평가적립금 제외)의 감소액 ❷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 ▢ 한도 내 감액배당 시 배당순서 ○ 3% 재평가적립금 * 3% 재평가적립금 중 합병법인의 증가한 자본금에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의제배당대상 외 자본잉여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자본에 전입된 금액 ○ 이익잉여금, 의제배당과세대상 자본잉여금 ○ 의제배당비과세대상 자본잉여금 ▢ 준비금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감액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02. 자본거래 과세 합리화

④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감액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자본을 환급받는 경우 장부가액 조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신 설>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규정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 종전장부가액에서 감액배당 받은 금액 차감

0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법인세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

가. 개정취지

○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및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금액(의제배당소득)	○ (좌 동)
▢ 다음의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 과세되지 않은 금액은 익금산입
❶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등의 수입배당금 ❷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은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❸ 법인세 비과세 · 면세 · 감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 (좌 동)

<추 가>	❹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및 자기주식보유법인이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❺ 3% 재평가적립금(합병 · 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04. 연결납세방식의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 신설

(법인세법 제19193호 부칙 제15조의2)

가. 개정취지

○ 연결범위 변경에 따른 납세자 과세제도 선택권 부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 의무적용기간 예외 허용
○ (제한) 최초 연결납세방식 적용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포기 불가(5년 의무적용)	○ (좌 동)
<신 설>	– (예외) 연결대상법인 확대에 따라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완전자법인이 아닌 법인이 연결납세대상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포기 허용 * '24.1.1. 이후 연결자법인이 새롭게 연결집단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
○ (신고기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 (좌 동)
<신 설>	– (특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5. 연결법인 해산 시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합리화

(법인세법 제76조의12, 같은 법 부칙 제10조)

가. 개정취지

○ 신고 제도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대상법인 변경 시 변경신고기한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추 가>	▢ 해산 시 신고기한 추가 ○ (좌 동)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

06. 연결법인 간 결손금 대가에 대한 정산규정 정비

(법인세법 제76조의19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7 제4항, 제120조의22, 제120조의26)

가. 개정취지

○ 연결법인 간 과세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연결집단 결손 시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기준 ○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 법인별 세액을 모든 연결법인 간 소득·결손금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 ▢ 연결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❶결손금을 공제한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조정연결세율)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 각 연결법인의 연결조정 후 소득 - 각 연결법인의 연결조정 후 소득에서 공제된 해당 법인의 이월결손금등
■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의 합계액
■ 조정 연결산출세액
: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에 대해 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 조정 연결세율
: 조정 연결산출세액÷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❷ 결손금을 지급한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text{연결산출세액} - \text{조정 연결산출세액}) \times \frac{\text{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text{연결집단 전체 결손금*}}$$

* 연결소득금액 및 연결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 결손금 중 해당 법인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 제외

❸ 결손금 공제 ·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진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❶의 금액 + ❷의 금액

▢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❶ 연결모법인에 지급하는 정산금
= (연결법인별 연결조정 과세표준상당액 ×조정 연결세율)

❷ 연결모법인으로부터 배분받는 정산금

$$= (\text{조정 연결산출세액}) \times \frac{\text{해당 연결법인의 결손금*}}{\text{연결집단 전체 결손금*}}$$

* 연결소득금액 및 연결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 결손금 중 해당 법인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 제외

▢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완전자법인만으로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경우
○ 연결법인 외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예외적용 명확화

(법인세법 제113조)

가. 개정취지

○ 납세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합병 시 구분경리 생략 허용 범위 ※ 연결납세의 경우 구분경리 생략규정 없음 ○ 중소기업 간 합병 시 ○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 시	▢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생략 가능 명확화 ○ 연결모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포함 ○ 연결모법인이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포함

08.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1항)

가. 개정취지

○ 연결법인 간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결대상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 대상 자산 범위	▢ 양도손익이연자산 범위에 국외자산 추가
○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 (좌 동)
– 유형고정자산 및 무형고정자산 – 매출채권, 대여금 등 채권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 토지와 건축물	○ (좌 동)
<추 가>	○ 외국법인의 주식등* * 보유 주식 등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09.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

법인세법 제120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3

가. 개정취지

○ 조문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제출기한 ○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 제출기한 명확화 ○ (분기별 거래명세서)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 ○ (연간 거래집계표) 연도 종료일의 다음 다음달 말일

10.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현행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가. 개정취지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업 ○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 포함)·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반영 ○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 포함) 외의 농업 ○ 연금 및 공제업 → 연금업 및 공제업

* 1) 국민연금사업 2) 특별법 및 인·허가 받은 단체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사업	

1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제외 대상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원칙)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 (예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 중소기업 – 회생계획 · 기업개선계획 등을 이행중인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등 <추 가>	▢ 공제한도 예외 대상 추가 ○ (좌 동) – 조특법 §4 중 수익사업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 * [조특법 §4①] (1) 학교법인·산학협력단 등 (2) 사회복지법인 (3) 국립대학병원 등 (7)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 (8) 고유목적사업등 지출액 중 장학금 비중이 80% 이상인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 (9) 공무원연금공단 등 [조특법 §4④] 지방 소재 비영리의료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기준 규정

① 주택도시보증공사 12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9조)

가. 개정취지

○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IFRS17 적용법인 수익의 범위 ○ 보험감독회계 수익인식에 따라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이 감소한 금액 <추 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준비금 감소금액 추가 ○ (좌 동)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수익인식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감소한 금액
▢ IFRS17 적용법인 손비의 범위 ○ 보험감독회계 비용인식에 따라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이 증가한 금액 <추 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준비금 증가금액 추가 ○ (좌 동) ○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 수익인식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증가한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기준 규정

②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12 전환손실 등 손익인식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4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험계약 관련 손익인식기준 ○ (원칙) 실제 보험료·보증료 등이 수입된 날 등 현금주의에 따라 손익인식 ○ (예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우 회계상 수익·비용으로 인식한 사업연도에 손익인식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익인식 기준 규정 ○ (좌 동) ○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예외 적용대상에 추가
<신 설>	▢ 전환손실* 손익인식 기준 ○ 전환손실은 최초적용사업연도부터 5년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 *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른 책임준비금에서 종전 회계기준에 따른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주택도시보증공사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손익인식기준 규정

③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적용대상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9조의2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4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제도 간 정합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 (대상)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함 ○ (손금산입) 충당금적립금의 Max[1%, 구상채권발생률]	▢ 적용대상 조정 ○ (좌 동) <삭 제> ○ (좌 동)

○ (귀속시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 (좌 동)
▢ 대위변제금액 손금불산입 ○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삭 제>
<신 설>	▢ 종전 충당금적립금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유보액과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적립금 간 차액은 5년간 균등분할 손금산입

13.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의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가. 개정취지

○ 근로자 출산 · 양육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손비 및 필요경비의 범위 ○ 판매한 상품 ·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 부대비용 ○ 인건비 <추 가>	▢ 근로자 출산 · 양육 지원금을 손비 및 필요경비에 추가 ○ (좌 동)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 양육 지원금* *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른 것에 한함

14.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가. 개정취지

○ 손금 인정범위 합리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인정 요건	▢ 손금인정 범위 및 요건 개선
○ 중소 · 중견기업	○ 내국법인
○ 직 · 간접적으로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 (좌 동)
○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액의 50% 미만인 경우	○ (좌 동)
<추 가>	○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를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소득세로 납부한 경우에 한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5. 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의 현행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별표1)

가. 개정취지

○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 (대상) 다음 법률 또는 외국법령에 따라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 징벌적 손해배상금 범위 현행화 ○ (좌 동)

「가맹사업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조물 책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파견법」
「기간제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추 가>	「남녀고용평등법」 「상표법」 「농수산물품질법」 「식물신품종법」 「대규모유통업법」 「실용신안법」 「상생협력법」 「자동차관리법」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디자인보호법」 「축산계열화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산업기술보호법」 「환경보건법」
○ (손금불산입액)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배상금 – 다만,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손해배상금의 2/3	○ (좌 동) –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 손금불산입액 = A× (B−1)/B A : 지급한 손해배상금 B : 실제 발생한 손해액 대비 손해배상액의 배수 상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부터 적용

16. 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한 공익법인 지정 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활동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 지정방식 변경 · 시행 ○ (대상) – ❶ 2018.2.13.전에 인 · 허가 받은 학술연구 · 장학 · 기술진흥 · 문화 · 예술 · 환경보호운동단체 – ❷ 2018.2.13.전에 舊「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	▢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 보완 ○ (좌 동)

○ (지정방식 · 인정기간) – 2020.12.31.까지는 별도 지정절차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 2021년 이후에는 별도 지정 · 고시를 통해 공익법인으로 인정 – ❶, ❷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2022.3.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 · 고시되는 경우 20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 (좌 동) – ❶, ❷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2023.12.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 · 고시되는 경우 20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17.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가. 개정취지

○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이용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요건 ○ 업무전용보험가입 <추 가>	▢ 손금산입 요건 강화 ○ (좌 동) ○ 법인업무용 전용번호판 부착* *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착의무대상 차량인 경우(2024.1.1. 시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18. 신협공제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가. 개정취지

○ 공제사업 간 과세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보험사업 또는 공제사업 관련 책임준비금 범위 ○ 해약환급액 – 수산업협동조합, 무역보험공사, 새마을금고, 건설공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의 보험 · 공제사업의 해약환급액 ○ 보험금지급준비금 ○ 계약자배당준비금 –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 새마을금고 공제사업 <추 가>	▢ 계약자배당준비금에 신협 추가 ○ (좌 동) – 신용협동조합 공제사업

19.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가. 개정취지

○ 국고보조금 간 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가액 손금산입 ○ 다음의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업용 자산 취득시 보조금 상당액 손금산입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전기사업법」,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철도공사법」, 「농어촌정비법」,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환경정책기본법」 <추 가>	▢ 대상법률 추가 ○ (좌 동)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0.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가. 개정취지

○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상품 등 판매 : 인도일 ○ 상품 등 외의 자산 양도 :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건설등 용역 제공 : 작업진행률 기준 * (예외) 중소기업의 1년 이내 건설, 인도기준 계상시 인도기준 허용, 작업진행률 계산 곤란시 인도기준 <신 설>	▢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 기준 보완 ○ (좌 동)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토지개발사업 수익·비용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시 – 완공 전 양도된 토지의 매각 수익에 작업진행률 기준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21. 무상할당 받은 배출권 취득가액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가. 개정취지

○ 법령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산의 취득가액 ○ 매입가액에 취득세 · 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제조 · 생산 등으로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 노무비 · 운임 등의 합계액 ○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상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은 '0'원 ○ 별도로 정하는 것 외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 배출권 거래 관련 취득가액 규정 명확화 ○ (좌 동) ○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및 「대기관리 권역법」에 따라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은 '0'원 ○ (좌 동)

22. 유동화전문회사등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 소득공제의 신청절차 보완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20조의4)

가. 개정취지

○ 소득공제 적용 시 주주단계 과세여부 확인 절차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배당을 받은 주주등 · 수익자가 동업기업인 경우 소득공제 신청 방법 ○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의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 첨부 <신 설>	▢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상위 동업기업인 경우 신청 방법 보완 ○ (좌 동) – 동업자 전부 또는 일부가 상위 동업기업인 경우에는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첨부

23. 무증자합병 관련 합병법인 주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규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신 설>	▢ 무증자합병 관련 규정 명확화 ○ 무증자합병*시 합병법인 주식의 가액조정 *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주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합병법인 종전 주식의 가액 + 소각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 현금 등 지급액

2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가. 개정취지

○ 법령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시 위반자 및 제출서류	▢ 발급의무 위반자 명확화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현금 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
○ 증명서류 제출 시 포함사항 – 신고자 성명 –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 –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 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받은 일자 거래내용 및 금액	○ (좌 동) – (좌 동) –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의 상호 – (좌 동)

법인세법(국제조세 분야)

✔ 주요 개정 내용

○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한-러 조세조약 위반 초과외국납부세액분 포함
○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설
○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

【관계법령】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930호) : 2023.12.31. 공포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266호) : 2024.2.29. 공포

01.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한-러 조세조약 위반 초과외국납부세액분 포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가. 개정취지

○ 이중과세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세액 ○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법인)세액(가산세 제외) –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제외 <단서 추가>	▢ 러시아가 조세조약을 위반하여 제한세율을 초과 과세한 세액 포함 ○ (좌 동) – 단, 러시아가 비우호국과 조세조약이행을 중단하여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 포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8.8. 이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부터 적용

02.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설

(법인세법 제98조의8 신설)

가. 개정취지

○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방식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 국외 증권·운용사가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 위해 국내증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 ○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시 소득지급자는 통합계좌 명의인에 대해 원천징수(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 면제 · 제한세율 미적용) ○ 원천징수 이후 조세조약상 비과세 · 면제 ·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03.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5항, 제98조의5 제2항, 제98조의6 제4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권익 보호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비거주자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 면제 경정청구 ○ (기한)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	▢ 경정청구 기한 변경 ○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국세기본법 §5의2①)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주요 개정 내용

○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방법 일원화
○ 특정외국법인(CFC)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도입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시행시기 조정

【관계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928호) : 2023.12.31. 공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264호) : 2024.2.29. 공포

01.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방법 일원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 의무 *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형태로 제출하는 대규모법인도 별도 제출
○ (제출의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 (좌 동)

납세의무자 – 단,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대규모 법인은 제외 * 대규모법인은 해당 자료를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형태로 제출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삭 제> * 개별기업보고서 부표형태로 제출 → 개별 규정·서식에 따라 제출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에 대한 자료 제출 분부터 적용

02. 특정외국법인(CFC*) 해외지주회사 특례 합리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 거주자·내국법인과 특수관계(50%이상 소유 등)인 해외투자법인]에 이자·배당·사용료 등 수동소득을 유보하여 국내과세 회피

가. 개정취지

○ 해외지주회사 특례 적용요건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적용 배제(해외지주회사 특례) 판정 요건 ○ 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금액비율 : 90% ※ 소득금액비율 = $\frac{\text{A (이자·배당소득)}}{\text{B (전체 소득)}}$ <추 가>	▢ 해외지주회사 특례 판정을 위한 소득금액 비율 계산식 합리화 ○ (좌 동) – 소득금액비율 계산식 분자(A)에 자회사 이자·배당소득 예·적금 예치에 따른 이자소득 합산 * 이자·배당소득 예·적금 이자만 합산하며, 그 외 소득에 대한 이자는 배제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3.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관련 용어·범위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가. 개정취지

○ 국제기준 반영을 위한 조문 정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정기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 ○ (용어) 금융회사등 ○ (범위)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 <추 가>	▢ 용어 · 범위 조정 ○ 금융거래회사등 ○ 금융거래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 • 은행, 기은, 산은, 수은, 농협 · 수협은행, 상호저축은행 · 중앙회 • 보험회사 •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 · 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 농협 · 수협 · 신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 여신전문금융사, 신기술사 – 추가 기관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 · 일임업자, 집합투자기구 • 그 밖에 기재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법인 · 단체
▢ 정기 금융거래 정보 ○ (용어) 금융정보 ○ (범위) 금융실명법상 금융정보 <추 가>	▢ 용어 · 범위 조정 ○ 금융정보등 ○ 금융실명법상 금융정보 및 그 밖에 금융거래 정보 또는 자료 – 금융실명법상 금융정보 – 그 밖에 금융거래 정보 또는 자료 • 추가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자산 거래 정보 · 자료 • 특정금융거래법 §2(2)(나)의 거래 정보 · 자료

04.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신설

가. 개정취지

○ 조세조약 이행 관리 및 국제조세 협력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 운영 근거 ○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사항의 협의를 위해 체약상대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 구성 · 운영 가능 – 상호합의절차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양국 세법상 중요 변경사항 통보 – 기타 조세조약 이행 및 국제조세 분야 협력 관련 사항

05.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가. 개정취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 단기거주 외국인 거주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신고의무 면제대상 추가 ○ 단기거주 외국인 거주자, 국제기관의 종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조약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 *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

○ 금융회사 등 ○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5.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

②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구체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법 개정내용(국조법 §54(1))>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국제기관 종사자 추가
  ○ 국제기관 및 국제기관 종사자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으로 규정

가. 개정취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구체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국제기관 및 국제기관 종사자 구체화 ❶ 국제연합 및 그 소속기구의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에 따른 비과세 ❷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조약·협정 등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 ▢ 다만, 정기적인 금융정보 교환국이 아닌 국가에 계좌가 있는 사람의 경우 신고의무 부여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05.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

③ 해외금융계좌 등 신고의무 출처 확인서 제출기관 확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99조)

가. 개정취지

○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 과세당국 요구*로 신고 위반 소명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과세당국은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소명을 요구(법 §56①)	▢ 관련 자료 제출기관 확대 ○ 관할 세무서장 →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 과세당국 요구*로 신고 위반 소명시 취득자금 소명대상 금액의 출처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과세당국은 해외투자 신고의무 위반시 취득자금 출처 소명 요구(법 §59①)	▢ 관련 자료 제출기관 확대 ○ 관할 세무서장 →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06.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도입

①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제91조)

가. 개정취지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을 통한 역외 세원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거주자 · 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 외국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 ❶ (신탁설정 · 이전 시) 거주자 ·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 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 제출 ❷ (신탁설정 이후) 거주자 · 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 통제*하는 경우 → 위탁자는 매년 자료 제출 * 위탁자가 신탁해지 권리, 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 권리,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등 ▢ (제출내용)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정보 등 신탁계약 기본정보, 신탁재산가액* 등 * 시가 또는 취득가액(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취득가액) ▢ (제출기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과태료)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최대 1억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026.1.1. 이후 자료 제출)

06.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도입

② 해외신탁 자료 제출내용 등 구체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제148조)

<법 개정내용(국조법 §58, §59, §91)>

▢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도입
○ 제출내용, 가액 산정방법 등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

가. 개정취지

○ 해외신탁 자료 제출을 통한 역외 세원관리 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 통제*하는 경우 구체화 * 실질적 지배·통제 시 위탁자는 매년 신고의무 발생 ○ 위탁자가 ❶신탁계약 해지권, ❷수익자 지정 · 변경권 또는 ❸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 귀속권을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 통제 ▢ 해외신탁재산 가액 ❶ 원칙 : 시가 – 현금 · 상장주식 · 상장채권 · 집합투자증권 · 보험 · 가상자산 : 시가기준일*의 금액 또는 가격 * 1)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해외신탁 과세연도 종료일 또는 해외신탁 종료일, 2) 그 외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이전일 – 그 외 해외신탁재산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정 가액 ❷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 취득가액 *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 ▢ (과태료 부과기준) 미제출 또는 보완요구에도 미제출시 해외신탁재산가액의 10%(최대 1억원) ○ 취득자금출처 미소명 · 거짓소명금액의 2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026.1.1. 이후 자료 제출)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①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정부 제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가. 개정취지

○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업의 범위 ○ 법인 <단서 신설> ○ 별도의 회계계정이 있는 조합 또는 신탁 등	□ 기업의 범위에서 정부 제외 ○ 법인. 다만, 정부는 제외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② 기업이 무국적고정사업장만 두는 경우는 그룹에서 제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가. 개정취지

○ 그룹의 대상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그룹의 정의 ○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하여 서로 연결된 기업들의 집단 ○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외의 국가에 하나 이상의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단서 신설>	□ 기업이 무국적고정사업장만 두고 있는 경우는 그룹에서 제외 ○ (좌 동) ○ (좌 동) – 다만, 무국적 고정사업장만 있는 경우는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③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3호)

가. 개정취지

○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 주석서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정사업장의 정의 ○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 ○ 외국에 소재하는 국내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	▢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 ❶ 시행중인 조세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사업장 ❷ 시행중인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는 소재국의 국내법에 따라 순액기준으로 과세되는 사업장 ❸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한 경우, 그 국가가 OECD모델 조세조약에 의해서라면 과세권을 가진 것으로 취급되었을 사업장 ❹ 위의 ❶~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국가 밖에서 영업을 수행하면서 그 국가에서 과세하지 않는 사업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④ 최종모기업 범위 보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2항 신설)

가. 개정취지

○ 지배지분 범위의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배지분의 정의 ○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기업을 연결하여야 하는 지분 <신 설>	▢ 지배지분 정의의 명확화 ○ (좌 동) ○ 국부펀드*가 소유한 지분은 지배지분에서 제외 * 국제수지 균형, 재정수요 대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한 투자펀드로서 정부가 그 운용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⑤ 유로화 기준금액의 환산 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신설)

<법 개정내용(국조법 §58, §59, §91)>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준금액(7.5억유로) 원화 환산 시 적용환율

가. 개정취지

○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유로화 기준금액의 환산 방법 ○ 해당 사업연도 직전 12월 한 달의 평균 환율을 사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⑥ 제외기업 중 구성기업으로 선택 가능한 범위 수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제외기업의 범위 * 제외기업 범위(§62의③) 1. 정부기관 ┐ 2. 국제기구 ├ 당연 제외 3. 비영리기구 ├ 4. 연금펀드 ├ 5.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 6. 최종모기업인 부동산 투자기구 ┘ 7. 제1호~제6호의 기관이 소유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임의 제외 ○ 모든 제외기업을 구성 기업으로 선택가능	▢ 제외기업의 선택 범위 수정 ○ 임의제외 기업만 구성 기업으로 선택가능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⑦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 신설)

가. 개정취지

○ 글로벌최저한세의 정확한 실효세율 계산방식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고정사업장의 순손익 ○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시 미포함 <신 설>	▢ 고정사업장 손실에 대한 본점 배분 특례규정 ○ (원칙) 좌 동 ○ (특례) 고정사업장 결손이 다음 ❶·❷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본점의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결손에 포함 ❶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 시 손금으로 산입될 것 ❷ 본점 및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에서 다른 소득과 상계되지 않을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⑧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액 산정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3항·제4항 신설,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2 신설)

가. 개정취지

○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추가세액 비율은 최저한 세율에서 실효세율을 차감 ○ 추가세액 비율이 음수 → 추가세액 비율 영으로 간주 <신 설>	▢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상황을 규정 ○ (좌 동) ○ 추가세액 비율이 최저한 세율 15%를 초과하는 경우* * 조정대상조세가 음수이며, 순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금액이 양수인 경우 ❶ 해당사업연도에는 최저한 세율 15%로 세액 계산 ❷ 15%를 초과하는 세액은 후속사업 연도의 조정대상 조세에서 차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⑨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120조 제2항 신설)

가. 개정취지

○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글로벌최저한세의 추가세액이 면제되는 적격 소재국추가세의 인정요건(①~③ 모두에 해당) ① (회계요건) 적격소재국추가세가 부과되는 국가에서 구성기업이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아래 ❶·❷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❶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른 최종모기업 회계 기준 또는 인정 회계기준이거나 공인회계기준 ❷ 적격소재국추가세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의 공인회계기구가 승인한 회계기준으로서 ▪ 기업의 회계계정이 해당국가의 회사법 등에 의해 작성되거나,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 ② (일관성요건) 적격소재국추가세 제도가 아래 요건(❶~❹)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❶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과 일치 ❷ 실질기반제외소득을 인정하지 않거나,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금액보다 적게 인정 ❸ 최소적용제외 규정을 인정하지 않거나,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기준보다 적게 규정 ❹ 세율을 최저한세율(15%)보다 높게 규정 ③ (관리요건) ①·② 요건 등의 충족여부에 대해 OECD 동료평가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⑩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의 요건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4항 산식, 같은법 시행령 제125조 제3항 신설)

가. 개정취지

○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은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득산입규칙 ❶ 글로벌최저한세 규칙(OECD합의)에 따른 결과와 부합하도록 시행 ❷ 해당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 해당 제도와 연관된 편익을 제공 하지 않을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⑪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5항)

가. 개정취지

○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방식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추가 세액 배분방법 * 추가세액의 총액은 ❶국가별 배분 후 해당국에 소재한 ❷기업별로 배분 ❶ (국가별 배분방식) 종업원 수·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고려하여 국가별 배분	▢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보완 ❶ (좌 동)

배분비율 = 50% × $\frac{\text{해당 국가의 종업원수}}{\text{모든 국가의 종업원수}}$ + 50% × $\frac{\text{해당 국가의 유형자산}}{\text{모든 국가의 유형자산}}$ * 모든 국가 :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국가 ❷ (기업별 배분방식) 종업원 수 ·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고려하여 기업별 배분 배분비율 = 50% × $\frac{\text{해당 기업의 종업원수}}{\text{모든 기업의 종업원수}}$ + 50% × $\frac{\text{해당 기업의 유형자산}}{\text{모든 기업의 유형자산}}$ * 모든 기업 : 추가세액 배분받은 국가內 기업	❷ ① · ② 중 선택 ① 모기업의 직 · 간접 보유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각 구성기업에 배분 ②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구성기업에 배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⑫ 소득산입보완규칙 세액배분 예외 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6항 신설)

가. 개정취지

○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방식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의 국가별 배분 방식 ○ (배분) 소득산입규칙 적용 후 잔여 추가세액을 배분 – 종업원수와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을 50%씩 가중 평균한 비율로 배분 <단서 신설>	▢ 특정 구성기업이 소득산입 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의 배분 방식 규정 ○ (좌 동) – 다만, 특정기업이 소득산입 보완 규칙에 따라 배분된 추가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업의 소재지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배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⑬ 조직재편에 따른 특례적용 보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9조 제4항·제5항 신설)

가. 개정취지

○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조직재편 처리 규정 ○ (원칙) 처분구성기업의 소재지에서 소유지분의 이전을 과세하고 구성기업간 자산·부채의 취득·처분은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에 반영 ○ (특례) 구성기업간 자산·부채의 이전이 조직재편*에 해당 하는 경우 * 이전대가가 취득구성기업 또는 취득구성기업의 특수관계자가 발행하는 출자지분 –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에 미반영(과세이연)	▢ 특례적용 내용 추가 ○ (좌 동)
<추 가>	○ 구성기업 소재지국에서 세법상 장부가액을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차액은 ①,② 중 하나로 반영 ■ ① 차액 전부를 조정시점의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에 반영 ■ ② 차액을 5로 나누어 조정 시점과 이후 4개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에 반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⑭ 투자구성기업의 특례 적용대상 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8호, 같은법 제7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과세단위가 아닌 투시과세기업 개념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투자구성기업*의 계산 특례 * 투자기업·보험투자기업인 구성기업 ○ 투자구성기업의 경우 ❶ 개별 계산*, ❷ 투시과세처리**, ❸ 과세분배방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투자구성기업 실효세율·추가세액은 동일국가 내 다른 구성기업과 합산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계산 ** 주주구성기업이 시가법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 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 주주구성기업에 소득을 분배 후, 미배분 소득에 대해 15%로 과세 <단서 신설>	▢ 특례를 적용받는 투자구성 기업의 범위 규정 ○ (좌 동) – 다만, 투자구성기업의 특례적용에 있어 투시과세기업은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⑮ 투자구성기업의 특례적용 요건 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5항·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신설, 같은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신설)

가. 개정취지

○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 주석서 반영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투시과세처리방식의 적용요건 ○ 투자구성기업의 주주 구성기업에 대하여 공정가치과세 등 투시과세처리가 가능한 경우 : 아래 ① 또는 ② ① 주주구성기업이 소유하는 투자구성기업 소유 지분의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이익을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하는 경우 ②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보험업법」 제2조의 상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의 경우 □ 과세분배방식 적용요건 구체화 ○ 분배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한 해당 투자구성 기업 및 주주구성기업의 세액이 해당 분배 금액 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⑯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해외진출 초기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의 기산점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해외진출 초기단계 그룹*은 5년간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제외 * ① 6개 이하의 관할국에 소재하고 * ②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의 합이 5천만 유로이하 <신 설>	▢ 특례적용의 기산점 추가규정 ○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최초로 적용되는 시기(2025.1.1.)로부터 특례적용 기간 5년 기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⑰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관련 가산세 부과면제 및 감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5항 신설)

가. 개정취지

○ 제도도입 초기의 이행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납부 ○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봄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 <신 설>	▢ 신고·납부 가산세 부과면제 및 감면 ○ (좌 동) ○ (좌 동) ○ 전환기* 동안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과소신고·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면제 – 납부지연가산세 50% 감면 * 개시일이 '26.12.31. 이전이고, 종료일이 '28.6.30. 이전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⑱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44조 제3항 신설)

가. 개정취지

○ 제도도입 초기의 이행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신 설>	▢ 전환기* 과태료 부과 면제 * 개시일이 '26.12.31. 이전이고, 종료일이 '28.6.30. 이전 ○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면제 * ❶~❺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❶ 계산내역 전체를 과세당국에 완전히 공개 ❷ 오인의 상황이 합리적인 경우 ❸ 오류가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경우 ❹ 합리적 해석에 기반한 경우 ❺ 당기 또는 이후 사업연도 납부 세액부담이 경감되지 않는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08.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가. 개정취지

○ 주요국의 시행시기 감안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시기 ○ 소득산입규칙 : 2024.1.1. ○ 소득산입보완규칙 : 2024.1.1.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시기 유예 ○ (좌 동) ○ 2025.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주요 개정 내용

○ 혼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
○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 공익법인 지출의무 비율 관련 산정기준 변경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932호) : 2023.12.31. 공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267호) : 2024.2.29. 공포

01.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가. 개정취지

○ 결혼 · 출산비용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여재산 공제* * 증여자별 아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 기준 10년간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초과분은 공제제외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단, 수증자가 미성년자 :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직계존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좌 동)
<신 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❶ (증여자) 직계존속 ❷ (공제한도) 1억원 ❸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❹ (증여재산) 증여추정 · 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반환특례 –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 약혼자의 사망, 「민법」 제804조 각 호의 약혼 해제 사유 ○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 가산세 면제 범위 ❶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단,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 ❷ 납부지연가산세 ** 이자상당액 = 증여세액 × ❶ × ❷ ❶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❷ 1일 10만분의 22(국기령§27의4)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신 설>	▢ 출산 증여재산 공제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❶ (증여자) 직계존속 ❷ (공제한도) 1억원 ❸ (증여일)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신 설>	▢ 통합 공제한도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출산 증여재산 공제 : 1억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0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 개정취지

○ 가업상속 지원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 상속인의 가업종사	▢ 업종유지 요건 완화 ○ (좌 동)

–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하지 않을 것	– (좌 동) – 중분류 → 대분류 – (좌 동)
○ 자산 유지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 ○ 지분 유지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 고용 유지 –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03.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 개정취지

○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업상속공제 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상속인 요건 완화 ○ (좌 동) ○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은 적용 배제
▢ 상속인 가업영위 사후관리 요건 ○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업종으로 변경하는 요건은 적용	▢ 요건 완화 ○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은 적용배제 *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업종으로 변경하는 요건은 적용

▢ 기타 사후관리 요건 ○ 자산 40% 이상 처분 금지 ○ 상속받은 지분 유지 ○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적용

04. 서화·골동품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개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보충적 평가방법 합리화 및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서화 · 골동품 보충적 평가방법 ①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②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 Max(감정평가액,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 <단서 신설>	▢ 평가방법 개선 ① 2인 이상의 전문가 → 2개 이상의 전문기관 ② 평가방법 개선 – (좌 동) – 다만, 감정평가액이 감정평가심의회 감정가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의 감정가액(특수관계인 간에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2.29.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01. 공익법인 지출의무 비율 관련 산정기준 변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1조의2)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의 지출의무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일정비율 상당액 공익목적사업 지출 의무	▢ 지출실적 등 산정기준 합리화
○ 의무지출액 – 출연재산 가액의 1% * 주식 10% 초과 보유 공익법인 : 3%	○ (좌 동)
○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	○ 상장주식 가액 산정기준 변경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 (좌 동)
–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 평균	– (좌 동) – 다만, 5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5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가액 평균
○ 지출실적 산정기준 – 해당 사업연도 사용 실적	○ ❶, ❷ 중 선택 가능 ❶ 해당 사업연도 사용실적 ❷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4개 사업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02.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가. 개정취지

○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 ○ (감리주체) 기획재정부장관 →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 <신 설>	▢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 (좌 동) ○ (수수료 징수) 수탁기관(한국공인회계사회)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 가능 * 수수료율(감사보수의 1% 이내)은 시행규칙에 규정
○ (감리대상)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감사보고서 * 대상 : 자산 100억원 이상 등 공익법인(종교, 학교·유치원 교육법인 제외) ○ (감사인 제재) 감사기준 위반 감사인은 기재부 장관이 금융위에 통보하고 금융위에서 제재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이달의 특 집

중소 · 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 국세청 –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승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다음 세대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등을 두고 있으며, 2023년부터 「가업승계 시 상속 · 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증여세 제도 요약>

가. 가업상속공제제도(상증법 §18의2)		
혜택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300억원, (20년이상)400억원, (30년이상)600억원 한도	
요건	피상속인	· 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 피상속인 포함 최대주주 지분 40%(상장 20%) 이상을 10년간 보유
	상속인	·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
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조특법 §30의6)		
혜택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20억원까지 10%(12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 적용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300억원, (20년이상)400억원, (30년이상)600억원 한도	
요건	증여자	· 최소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
	수증인	· 18세이상 거주자(자녀)

다.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상증법 §71)	
혜택	총상속세 중 가업상속재산 해당분은 20년 분할납부(또는 10년 거치 10년 분할 납부)
요건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라.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상증법 §72의2, 조특법 §30의7)	
혜택	가업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거주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유예 ※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요건	중소기업

Ⅰ. 가업상속공제 제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제도라고 합니다.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②)

<'24년 주요 세법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 상속인의 가업종사 -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을 것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좌 동) - (좌 동) - 중분류 → 대분류 - (좌 동)
⊙ 상속인 요건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상속인 요건 완화 ○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은 적용 배제
⊙ 상속인 가업종사 사후관리 요건 ○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 ○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 업종변경* *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업종으로 변경하는 요건은 적용	⊙ 상속인 가업종사 사후관리 요건 ○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은 적용배제 *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업종으로 변경하는 요건은 적용 [신설]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25항

1.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건	기준	상세내역
가업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 1, 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④ 1, 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②1호,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피상속인	주식보유기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대표이사 재직요건 (3중 1가지 충족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연령	18세 이상
	가업종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 예외규정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 피상속인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취임기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납부능력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19. 1. 1.부터 시행
	배우자	상속인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가.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요건 충족 중소기업

1) 가업의 규모 및 업종요건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요건 (상증령 §15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조①항 1호 및 3호 요건(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중견기업 요건 (상증령 §15②)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 (납부능력 요건) 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④1호 및 3호 요건(중견기업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2) 가업경영기간 요건

○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실제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3. 2. 28.>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 · 중견기업의 해당 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05 ~ 08)	광업 전체
다. 제조업(10 ~ 33)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37 ~ 39)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마. 건설업(41 ~ 42)	건설업 전체
바. 도매 및 소매업 (45 ~ 47)	도매 및 소매업 전체
사. 운수업(49 ~ 52)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아. 숙박 및 음식점업 (55 ~ 56)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자. 정보통신업 (58 ~ 63)	출판업(58)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한다.
	방송업(60)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 ~ 73)	연구개발업(70)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732)
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74 ~ 7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7422)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타. 임대업 : 부동산 제외 (76)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 교육서비스업(85)	교육 서비스업(85) 중 유아 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하.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거.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 91)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업 해당 업종
가.「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라.「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바.「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사.「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아.「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자.「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차.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카.「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타.「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하.「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거.「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나. 피상속인 요건 충족(모두 충족)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여야 합니다.

② 법인 가업은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지분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 **"최대주주 등"이란?**
>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과 그의 특수 관계인 모두를 말함
> ☞ 피상속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③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아래의 기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로 재직하여야 합니다.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

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함)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④ 피상속인은 최대주주 1명으로 제한됩니다.

다. 상속인 요건 충족

①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거주자 요건 없음(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수증자가 거주자여야 함)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 다만 65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이 안 되어도 가능합니다.
> · 또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

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④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사후관리기간에 확정되는 경우 추징)

※ 상속인의 배우자가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2.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가업상속 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가업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가업으로 구분해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있습니다.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가업의 경우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합니다.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가업의 경우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사업무관자산 비율 제외)을 말합니다.

【가업상속재산가액】

개인가업	법인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	주식·출자지분 × [1 - (사업무관자산가액/총자산가액)]

3. 가업상속공제 금액

가. 일반적인 가업상속공제 한도

○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원, 20년 이상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금액 한도 개정 내용>

사업영위기간	공 제 금 액	
	'18.1.1. ~ '22.12.31	'23.1.1 이후
10년 이상	200억원	3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4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600억원

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납부세액 비교 (2023년 기준)

-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만 700억원이며
- 상속인은 자녀 1명이고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구 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
700억원	상속 재산가액	700억원
없음	가업상속공제액	(600억원)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695억원	상속세 과세표준	95억원
50%(누진공제 4.6억원)	세 율	50%(누진공제 4.6억원)
342억 9,000만원	산출세액	42억 9,000만원
(10억 2,870만원)	신고세액 공제	(1억 2,870만원)
332억 6,130만원	자진납부 세액	41억 6,130만원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291억원의 상속세를 적게 부담

나. 2개 이상의 가업상속 시 상속공제 금액 계산방법

○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기업을 영위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기준으로 공제한도 금액을 적용하여,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별 공제금액은 기업의 경영기간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다. 가업상속 공제의 배제(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조의2 ②)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 ① ②
①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 외 상속재산가액
②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 × 2

4.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 가업용 자산 명세
- ▸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 ▸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가업상속 후 5년간 정상승계 여부 사후관리

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재계산 ·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 이자상당액
> =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액 ×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사유 발생일까지의 일수 × 2.9%* / 365
> * 상속세 부과당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2023년부터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이는 2023.1.1.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업상속 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단축기간 5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란 가업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 ⑤).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40%이상을 처분한 경우

>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 = [가업용 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 허용)
>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유상증자 시 상속인이 실권하여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시 실권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해당 법인의 감자로 인해 보유주식 수가 감소한 경우(단, 균등 무상감자는 제외)

–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

도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④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5년 후 판단)

①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②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20①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

다.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였더라도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⑧)

①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

-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합병 · 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③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

- 합병 · 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함
-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상속받은 주식 등을 상증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여 그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물납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 하게 감자하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6.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취득시기 계산

○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추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 보유기간 중 발생한 재산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월과세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계산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97의2)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아래의 ㉠과 ㉡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 : [가업상속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적용합니다.

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시 상속세 추징세액 조정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했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추징세액을 조정합니다.

▶양도소득세 상당액
=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 적용) -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7조 적용)*] × 기간별 추징율
*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말함

II.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중소 ·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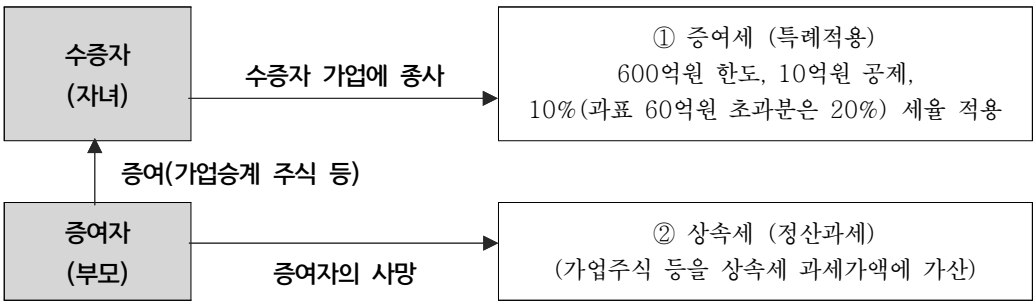

<'24년 주요 세법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 (세율) 10% - 단, 60억 초과분은 20% ○ (연부연납 기간) 20년 ⊙ 수증자 가업종사 사후관리 요건 - 수증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것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을 것	⊙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조정 ○ (좌 동) - 단, 120억원 초과분은 20% ○ (연부연납 기간) 15년 ⊙ 수증자 가업종사 사후관리요건 완화 - (좌 동) - 중분류 → 대분류 - (좌 동)

① 주식증여가액이 70억원인 경우

일반적 증여인 경우	구 분	특례적용 대상인 경우
70억원	증여세 과세가액	70억원
(0.5억원)	증 여 공 제	(10억원)
69.5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60억원
50%(누진공제 4.6억원)	세 율	10%(120억원 초과분은 20%)
30억 1,500만원	산 출 세 액	6억원
(9,045만원)	신고세액 공제	-
29억 2,455만원	자진납부 세액	6억원

*** 가업승계주식 특례 적용 시 23억 2,455만원의 증여세를 적게 부담**

② 주식증여가액이 600억원인 경우

일반적 증여인 경우	구 분	특례적용 대상인 경우
600억원	증여세 과세가액	600억원
(0.5억원)	증 여 공 제	(10억원)
599.5억원	증여세 과세표준	590억원
50%(누진공제 4.6억원)	세 율	10%(120억원 초과분은 20%)
295억 1,500만원	산 출 세 액	106억원
(8억 8,545만원)	신고세액 공제	-
286억 2,955만원	자진납부 세액	106억원

증여세 산출세액(112억원) = [(600억-70억원)×20%]+[(70억원-10억원)×10%]

* 가업승계주식 특례 적용 시 180억 2,955만원의 증여세를 적게 부담

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한 법인의 주식이 적용대상이며 개인사업자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용 자산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가. 수증자 요건

①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거주자인 자녀이어야 합니다.

②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나. 증여자 요건

① 가업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등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이어야 합니다.

② 증여자는 최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40(상장법인은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 증여세특례 신청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가. 일반증여와 차이점

① 가업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가액(600억원 한도)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이 경우 해당 증여 전에 이미 부모로부터 동일한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해야 하며, 합산한 결과 600억원을 초과한 가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text{가업자산상당액} : \text{증여한 주식가액} \times \left(1 - \frac{\text{업무무관자산가액}}{\text{총 자산가액}}\right)$$

②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 외의 재산)과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은 가업승계주식과,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과 합산**

④ 상속세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의 가액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 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합니다.
-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주식 등의 가액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일반증여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구 분	일반적인 증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공제	5천만원	10억원
세 율	10~50%	10~20%(600억원 한도)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	가능	불가능
상속재산 가산	10년 내 증여받은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재산에 가산

나. 가업을 2인 이상이 승계한 경우의 증여세 계산(p57 계산사례참조)

①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같은 날에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산출된 증여세액을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

② 해당 주식 등의 증여일 전에 다른 거주자가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 후순위 수증자의 경우 선순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선순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

다. 기타 과세특례적용 방법

①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3),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5)에 따른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 가액과 합산하여 10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창업자금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③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그 중 1인의 자녀에게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주주들 중 1인(A)이 먼저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한 경우 다른 주주(B)는 자녀에게 가업주식 증여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3.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서 제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가업용 자산 명세
- 가업법인의 증여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4.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가. 증여후 가업승계 불이행 시 정상세율로 증여세 과세

○ 가업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10%~50%)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자 상당액

$$\text{결정한 증여세액} \times \text{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times \frac{2.2^{*}}{10,000}$$

* '22.2.14. 이전 기간은 2.5/10,000

나.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1)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①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 수증자(배우자 포함)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중분류 외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②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는 제외(2015. 2. 3.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를 하면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다.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5.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가업승계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인의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주어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가업을 체계적으로 사전에 승계할 수 있도록 최대 600억원 한도내에서 10%에서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구 분			사후 가업상속	사전 가업승계
가업상속승계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한도		최대 600억원 (가업영위기간) 10년 300억원, 20년 400억원, 30년 600억원	최대 600억원 (가업영위기간) 10년 300억원, 20년 400억원, 30년 600억원
	기본공제		-	10억원
	세율		상속세율(10 ~ 50%)	과세표준 120억 이하 : 10% 120억 초과 : 20%
	피상속인 요건 (증여자)		최대주주 & 지분40%(상장20%)이상 10년보유	최대주주 & 지분40%(상장20%)이상 10년보유
	사후관리	기간	5년	5년
		업종	중분류 내 변경허용	중분류 내 변경허용
		고용	근로자수(총급여)5년 평균 90% 유지	없음
		자산	40%이상 처분금지	없음
		지분	상속받은 지분 유지	증여받은 지분 유지
납부유예			납부유예 선택가능(중소기업)	납부유예 선택가능(중소기업)
연부연납			20년(10년거치10년납부) 적용	15년 적용

Ⅲ.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일반 상속재산의 연부연납 기간은 10년이나,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거치기간 포함 최장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71)

1. 연부연납제도

○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세금납부를 위해 현금화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부득이 사업용 재산 등을 급히 매각하게 된다면 사업유지의 곤란, 저가매각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금전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의 기간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연부연납제도'라고 합니다.

2. 연부연납 신청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함

② 과세표준 신고기한(기한후 신고 포함)이나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3. 연부연납의 신청과 허가

연부연납 신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기한 후 신고서, 수정신고서 제출시와 결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납부에 대한 납부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부연납 신청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가.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① 신청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② 허가 :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6개월

나. 기한후 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① 신청 : 상속·증여세 기한 후·수정신고 신고와 함께 신청서 제출

② 허가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세는 6개월)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다. 납세고지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① 신청 :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② 허가 :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연부연납 신청자에 대하여 허가 통지 기한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4. 납세담보의 제공과 허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 신청세액(연부연납 가산금 포함)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연부연납의 신청 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 시 다음의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별도의 연부연납 허가통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① 금전 ② 국채 또는 지방채
③ 납세보증보험증권
④ 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의 통지 기한

연부연납 신청대상 세액 구분	신 청 기 한	허가통지 기한
•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할 세액	신고기한 이내	상속세 :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 신고기한부터 6개월
• 기한후 신고시 납부할 세액*	기한후 신고시 (결정통지 전)	상속세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증여세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신고 후 무납부에 대한 고지세액 • 무신고자나 미달신고자의 신고세액을 초과한 고지세액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4일 이내
• 증여자 연대납세 의무에 의하여 납부하는 증여세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	
• 연부연납신청시 특정 납세 담보물을 함께 제공한 경우	연부연납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간주	

5. 연부연납의 취소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①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납부 예정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납기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9①)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해당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
- 해당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공동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위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미납자)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나머지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며, 미납자가 납부해야 할 연부연납 세액은 일시에 징수함(상증령 §68⑧)
* 위 ④에 해당되면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허가일로부터 10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

6. 가업상속의 연부연납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대하여는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연부연납기간은 최장 20년이며 10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거치기간 선택 시) 연부연납 신청 시에 납부하지 않고 거치기한 경과 후 납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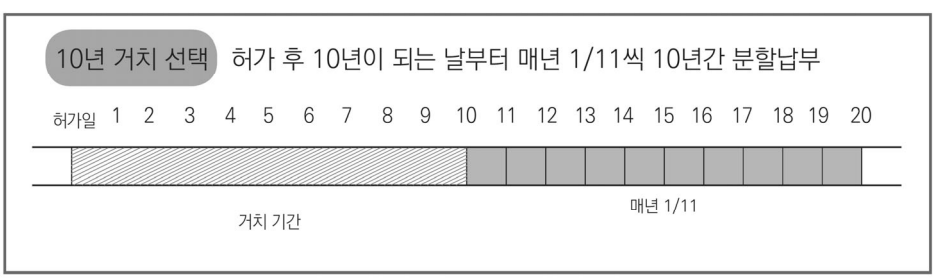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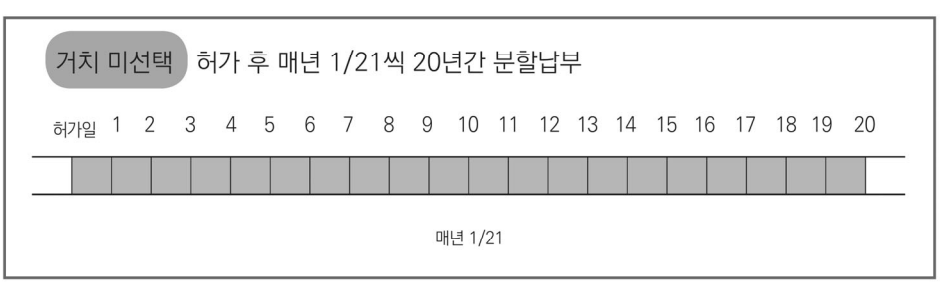

○ 연부연납 기간 중 매년 납부할 세액의 계산

$$[\text{상속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가업상속재산} - \text{가업상속공제액}}{\text{총상속재산가액} - \text{가업상속공제액}}] \times \frac{1}{(\text{연부연납기간}+1)}$$

<연부연납기간>

세목			연부연납기간	
			'08.1.1. ~ '22.12.31 상속 · 증여분	'23.1.1 이후 상속 · 증여분
상속세	가업상속재산	50% 미만	10년간 분할납부(3년 거치 가능)	· 20년간 분할납부 (10년 거치 가능) ※ 가업상속재산 비율 관계없이 적용
		50% 이상	20년간 분할납부(5년 거치 가능)	
	일반상속재산		10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22.1.1. 이후 상속분부터	
증여세			· 1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이전, 5년 적용)	

7. 연부연납 가산금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납부일 현재의 연부연납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가산금 납부의 대상이 되는 기간 중에 가산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합니다(계산사례 ③ 참조).

* 종전에는 가산율이 중도에 변경되었더라도 분납 전체기간의 일수에 납부일 현재 연부연납 가산율을 적용하였으나, '23.2.28. 이후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안분하여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방법〉

① 첫 회분 납부할 가산금

연부연납 총세액 × 납부기한(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첫 회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 × 납부일 현재 연부연납 가산율

② 첫 회분 이후 납부할 가산금

[연부연납 총세액 −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액] × 직전회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분납기한까지의 일수 × 납부일 현재 연부연납 가산율

③ '23.3.20.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24.3.31.납기 연부연납 가산금(1.2% → 2.9%)

[연부연납 잔여세액 × '22.4.1. ~ '23.3.19.까지 일수/365 × 1.2%] + [연부연납 잔여세액 × '23.3.20. ~ '23.3.31.까지 일수/365 × 2.9%]

[연부연납 잔여세액 × '24.3.22. ~ '24.3.31.까지 일수/365 × 3.5%]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17.3.15.~ '18.3.18.	'18.3.19.~ '19.3.19.	'19.3.20.~ '20.3.12.	'20.3.13.~ '21.3.15.	'21.3.16.~ '23.3.19.	'23.3.20~ '24.3.21	'24.3.22~
연 1.6%	연 1.8%	연 2.1%	연 1.8%	연 1.2%	연 2.9%	연 3.5%

Ⅳ. 가업승계 시 납부유예제도 신설

1. 납부유예제도

상속 · 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23년 상속(증여)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증여) 받은 가업재산을 양도 · 상속 · 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2 의2, 조세특례제한법 §30의7)

① 상속세 납부유예세액

$$\text{상속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가업상속재산}}{\text{총 상속재산가액}}$$

② 증여세 납부유예세액

$$\text{증여세 납부세액} \times \frac{\text{가업자산상당액}}{\text{총 증여재산가액}}$$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제도는 기존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비해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고 가업과 지분요건만 유지하면 되며 업종 유지 요건은 없습니다. 즉, 업종을 변경해도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유지 의무의 경우에도 사후관리 기간 5년을 통산하여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또는 총급여액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70% 이상을 유지(가업상속공제의 경우 90%이상 유지하여야 함)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미래에 업종 변경이 필요하거나 종업원을 10% 이상 감원해야 하는 경우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하여 다음 상속 시까지 세금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납부유예신청 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 상속인이 상속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을 상속받았을 것(가업상속공제 준용)

②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포함)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나.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았을 것(가업승계 과세특례 요건 준용)

②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것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3. 납부유예의 신청과 허가

가. 납부유예의 신청과 허가기한

○ 납부유예의 신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기한 후 신고서, 수정신고서 제출 시와 결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1)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유예 신청
① 신청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② 허가 :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6개월**

2) 기한후 및 수정신고 시 납부유예 신청
① 신청 : 상속·증여세 기한 후·수정신고 신고와 함께 신청서 제출
② 허가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세는 6개월)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3) 납세고지 세액에 대한 납부유예 신청
① 신청 :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② 허가 :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나. 납부유예 신청 시 제출서류

○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9의2①)

- 납부유예 신청서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가업승계시 증여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식지분이 감소하였으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아 납부유예 재신청시 해당)
-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가업을 다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납부유예 신청시 해당)

다. 납세담보의 제공

○ 납부유예신청 시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다만, 현금 ·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합니다.

- (금전·유가증권)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제출,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
-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인감증명서 등 첨부) 제출
-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등기(등록)필증을 제출하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

4. 납부유예에 대한 사후관리

납부유예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 상속인이나 수증인이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를 재계산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추징되는 경우

1)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하고 각 항목에 따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으로서 가업용 자산의 40%이상을 처분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

②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상속개시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

$$\text{납부유예된 세액} \times \frac{\text{감소한 지분율}}{\text{상속개시일 현재 지분율}}$$

④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상증시행령 §15⑬)**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20①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상증시행령 §15⑭)**

○ 이 경우 상속세에 추가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자 상당액

$$\text{추징되는 납부유예세액} \times \text{당초 상속받은 가업자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times \frac{3.5\%*}{365}$$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서, 당해 이자율이 기간 중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합니다.

2)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 항목에 따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수증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② 주식 등을 증여받은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증여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text{납부유예된 세액} \times \frac{\text{감소한 지분율}}{\text{상속개시일 현재 지분율}}$$

③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증여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조특시행령 §27의7⑪)**

㉡ 증여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20①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조특 시행령 §27의7⑫)**

○ 이 경우 증여세에 추가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자 상당액

추징되는 납부유예세액 × 당초 상속받은 가업자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 3.5%* / 365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서, 당해 이자율이 기간 중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로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납부유예를 적용받은 자가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합병 · 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③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2)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납부유예의 취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와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72의2⑤, 「조세특례제한법」 §30의7⑤)

①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납기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9①)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자 상당액

$$\text{취소(변경)되는 납부유예세액} \times \text{가업자산(주식)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times \frac{3.5\%*}{365}$$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서, 당해 이자율이 기간 중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합니다.

6. 납부유예의 재허가 신청

납부유예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세액과 이자상당액에 대한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7⑥)

① 상속인 또는 수증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0의6)를 적용받거나,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조특법§30의7)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또는 수증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제3장 - 기타 중소기업 지원제도

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2016.1.1. 도입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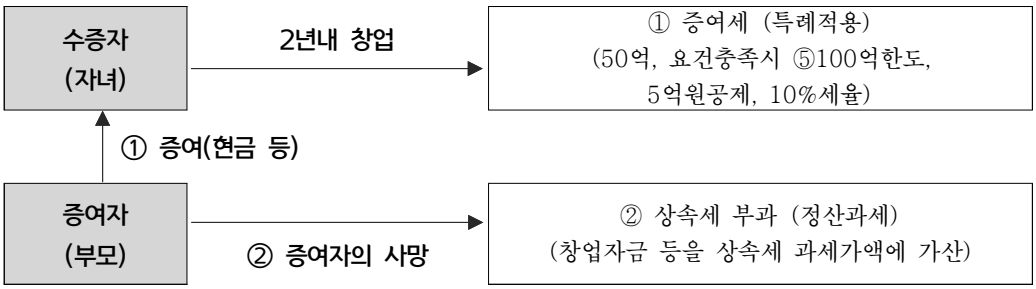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수증자 요건

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인 수에 관계없이 특례적용 가능

(부모가 장남과 장녀에게 50억원씩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과세특례 적용 가능)

나.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증여 받아야 합니다.

다. 증여 물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합니다.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제외),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등)
> -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 목적물은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라. 과세특례 신청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명 이상 신규고용 한 경우 「신규 고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마. 창업중소기업

1) 창업의 범위

'창업'이란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①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

②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③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④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⑤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창업의 기간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합니다.

4) 창업자금의 사용기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2. 과세특례의 세부내용

①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5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②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물건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④ 상속세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합니다.

-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⑤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 이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창업자금은 창업자금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

⑥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받을 수 없고 한가지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사후관리

가.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함

○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text{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text{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금액} \times \frac{3}{1{,}000}$$

*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한도

나.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 추징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하며, 1일 2.2/1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①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전체 과세

② 창업자금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조특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창업중소기업 등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을 과세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은 과세

⑤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⑥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은 과세

⑦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은 과세

> ▶ 계산산식
> 창업한 날의 근로자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고용한 인원 수 - 10명)

다.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⑥의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②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함)
- 다음의 경우는 위 ⑥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①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한 후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③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라. 증여세 추징 시 이자상당액 가산

○ 창업자금의 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하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합니다.

이자 상당액

$$\text{결정한 증여세액} \times \text{증여과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times \frac{2.2^{*}}{10{,}000}$$

* '22.2.14. 이전 기간은 2.5/10,000

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비교

구 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취지		부의 조기이전을 통해 경제활력 증진	생존시 가업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영속성 지원
요건	당사자	60세 이상 부모 → 18세 이상인 거주자	가업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인 부모 → 18세 이상인 거주자
	증여대상	양도세 과세대상제외 재산 [50(100)억원 한도]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600억원 한도]
	기타사항	2년 이내 창업	수증자가 증여세 과표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4년 이내에 창업자금 사용	
	특례신청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
과세특례		(증여세과세가액 - 5억원) × 10%	가업자산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억원)×10%(20%)

사후관리	가산세 부과	창업자금사용내역 제출 및 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미제출분·불분명한금액 × 0.3%	-
	증여세 추징 (이자상당액 가산)	- 2년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적용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 - 4년이내 모두 해당목적에 미사용하거나, 증여받은 후 10년이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5년이내 대표이사직을 상실한 경우 - 5년이내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이상 휴업·폐업 * '24.2.29. 이후 ① 대분류 내 변경, ② 대분류 이외는 평가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업종변경 가능 - 5년이내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포함(기간 상관없음) - 증여세액공제시 창업자금(주식)에 대한 증여세액공제 - 특례적용 받지 않는 일반세율적용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음 - 신고세액공제 적용 배제	

II.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 · 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라도 주식가액 평가시 할증평가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63③)

1. 주식·출자지분의 평가

상속 ·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주식 등(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원칙적인 평가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장주식(코스닥 포함) :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간(총4개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 비상장 주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2. 주식 등 할증평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 출자지분은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지배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주주의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할증하여 평가합니다.

가. 할증평가 대상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이 해당되며, 기업공개 준비 중이거나 거래소에 상장 신청한 주식 및 상장주식 중 증자로 취득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도 할증평가대상에 포함합니다.

나. 최대주주 판단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다. 할증평가액 산정

○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 ·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시가 등 주식평가액에 20%를 가산합니다.

–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최대주주 주식의 평가액 = (시가·보충적 평가가액) × (1+할증률)

라. 할증평가 제외

○ 중소기업 및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

②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합병), 제29조(증자), 제29조의2(감자), 제29조의3(현물출자), 제30조(전환사채)의 규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④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0)' 이하인 경우

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⑦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외의 자가 10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⑧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2016.1.1.이후 평가분부터)

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3. 중소기업 및 일정수준 중견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중소 · 중견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 · 증여받는 경우 상속 · 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식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앞에서 설명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 창업자금의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이 경우 '주식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024년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 및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등 5월 말 시행

- 행정안전부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

○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23년에 43~45%*로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한다.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 3억 이하 43% /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

※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게 관리하는 제도

–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없이 결정되었으나

–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하게 된다.

*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해당연도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 5%)

<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

○ 기존 1주택자가 '24.1.4.부터 3년간('26.12.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 특례 대상 지역 : 83개(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제외)

** 9억 이하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 적용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24.3.28일부터 2년간('25.12.31일까지) 지방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이 배제되어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

< 빈집 정비 지원 >

○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의 적용 범위를,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하여 자치단체와 협약하여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였다.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24.1.1. 시행)>
- 재산세 합산방식: (당초) 별도합산 6개월 → (개정) 별도합산 3년
- 주택 세액 기준 세부담 기간: (당초) 3년 간 인정 → (개정) 5년 간 인정
- 연간 세부담 증가율: (당초) 30% → (개정) 5%

□ 행정안전부는 금번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을 반영하여 자치단체가 '24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지방세관계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요약)

제목	조문	주요내용	비고
① 기업구조조정 리츠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영 제28조의2	○ 기업구조조정 리츠(법인)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중과세율 미적용 ※ 법인 주택 취득세율: (현행) 중과세율 12% → (개정) 일반세율 1~3%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3.28.)
②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인용조문 정비	영 제101조 제3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법인묘지용 토지 인용 조문 정비	
③ 도시지역 내 목장용지 등 분리과세 대상 명확화	영 제102조 제9항	○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12년)시 농협경제지주로 소유권이 이전된 목장용지 및 임야 분리과세 적용 → '89.12.31일 이전부터 농협중앙회가 소유하던 목장용지 및 임야에 한정	
④ 빈집 정비 후 공용토지 세부담 완화	영 제103조의2, 제118조	○ 빈집 철거 후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 별도합산과세, 주택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 적용	
⑤ 철거·멸실된 건축물 부속토지 별도합산 인정기준 명확화	영 제103조의2	○ 철거·멸실된 건축물 등 부속토지 별도합산 인정기준 보완 → 건축중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별도합산 제외 → 부속토지 범위* 마련 * 기존 건축물에 적용하는 용도지역별 배율(3~7배)로 한정	
⑥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평가 대상 명확화	영 제105조의3	○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 대상 - 행안부장관이 제외·축소하는 경우 외 추가·확대하는 경우도 포함	
⑦ '24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설정	영 제109조 제1항	○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 * 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⑧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 기준 신설	영 제109의2 규칙 별지서식 (제59호의3)	○ '24년부터 시행되는 과세표준상한액* 산출 기준 마련 *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해당연도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 ①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직전연도 공시가격 × 해당연도 공정시장가액비율 ②과세표준상한율 = 5%	
⑨ 인구감소지역 재산세 1주택 특례 적용	영 제110의2 규칙 별지서식 (제58호의3)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內 1주택을 신규 취득시,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택에 1주택 특례* 유지 -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광역시 제외. 단,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 * 접경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광역시 군 지역(대구 군위군) - (주택요건)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24.1.4일(정책발표일) ~ '26.12.31일까지 취득분 (단, 동일지역 추가 취득은 제외) *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vs. 다주택 60%, '23년), 9억 이하 주택 세율 △0.05%p 등 ※ '24.4.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발표	경제 정책 방향 (1.4.)
⑩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신고서식 보완	규칙 별지서식 (제64호의2)	○ 납세의무자, 위탁자로 구분된 서식에 수탁자를 추가하여 신탁관계에 따른 납세의무자 신고 시 혼란 방지	

잠자는 퇴직연금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 고용노동부 -

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5월 29일부터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폐업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그간에는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안내(SMS, 우편 등)해 왔다. 하지만, 가입자 명부 누락, 연락처·주소 변경 등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금융위·금감원·금융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이 힘을 모아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최초로 연계하여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는 아무 때나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금융회사 간 퇴직연금 운용 등 업무처리 과정을 표준화·전산화된 방식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근로자들은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후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되어 현재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 미청구 퇴직연금의 최종 지급을 위해서는 신분증, 지급신청서, 고용관계 종료 확인 가능 서류(예: 고용보

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확인 필요(어카운트인포에서 서류, 발급처 확인 가능)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 1,059억원(4만 8,905명), 폐업 추정 24.5억원(711명), 기타 1.6억원(18명) 등 총 1,085억원(4만 9,634명)에 달한다.

* ▲폐업 추정: 퇴직연금 부담금 2년 이상 미납 + 국세청 휴·폐업 조회 결과 휴업사업장
  ▲기타: 사용자가 지급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계좌 개설 거부 등으로 미지급 등

앞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은 함께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전환사채 등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24.1.23일 발표)에 대한 후속조치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4.5.28~’ 24.6.11)한다. 개정안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 등에 관한 △공시 강화,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전환우선주 포함

첫째,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공시를 강화한다.

현재 전환사채 등 발행시 콜옵션 행사자를 공시토록 해야 하나, 대부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 로만 공시하고 있어 투자자가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거나, 콜옵션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만기 전 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최대주주에게 재매각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전환사채 등의 만기 전 재매각은 사실상 신규발행과 유사함에도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회사가 만기 전 전환사채 등 취득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취득 및 처리계획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시장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예: 만기 전 취득 사유, 향후 처리방법(소각 또는 재매각 등)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반영 예정(금융감독원)

둘째, 전환가액 조정(refixing)을 합리화한다.

현재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는 원칙적으로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을 통해 70%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이 정관을 이용해 일반적인 목적(단순 자금조달, 자산매입 등)으로 예외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건별)를 통해서만 전환사채 등의 리픽싱 최저한도에 대한 예외 적용(최초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을 허용하였다.

한편,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과 달리 증자, 주식배당 등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발행기업이 이사회 결의로 자유롭게 조정 방법을 정할 수 있어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을 과도하게 하향 조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환권 가치 희석효과 반영 산식은 붙임 참조

아울러,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규율하였다. 현재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은 원칙적으로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 산정 후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납입일을 계속 연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당한 시가반영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발행 직전 주가를 전환가액에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사모 전환사채 등의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를 반영토록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안은 학계 · 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 ·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전환사채 등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23.7.20일)」,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제고방안 간담회 개최('24.1.23일)」 등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5.28일(화)부터 6.11(화)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증권선물위원회 ·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 증자 및 주식배당시 전환권 가치 희석 관련

□ 전환권 가치 희석효과 반영 산식

$$\text{조정후전환가격} = \text{조정전전환가격} \times \frac{\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frac{\text{1주당발행가격}}{\text{시가}})}{\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
"시가"는 증발공규정에서 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 (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산식의 산출 근거]
아래와 같은 조건 성립시, 주식가치의 희석화를 정확히 반영
▶ 조정전 전환가격 : 조정후 전환가격 = 변경전 주가 : 변경후 주가
(산식으로 전환)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변경후 주가* / 변경전 주가
* [{기발행주식수 × 시가(=변경전 주가)}+(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격)]/(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붙임 -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중요한 자산양수·도의 예외 등) ① (생 략) ② 영 제171조제3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2. (생 략) <신 설> <신 설>	제4-4조(중요한 자산양수·도의 예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의 행사자를 지정한 때(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매수선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주권상장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한 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4-5조(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등)	제4-5조(주요사항보고서 첨부서류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71조제4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영 제171조제4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6. 제4-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계약서 등 제3자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 또는 주권상장법인의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 매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4조제3항에 따른 경우 "전환사채"를 "전환주식"으로 본다)	가. 계약서 등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자 지정 및 제3자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 또는 주권상장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매수 및 매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4-4조제3항에 따른 경우 "전환사채"를 "전환주식"으로 보며, 제4-4조제4항에 따른 경우 "전환사채"를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본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	제5-22조(전환사채의 전환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전환가액은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사채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낮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인 경우에는 제5-1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①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전환가액은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법 제165조의6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가액 중 높은 가액(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사채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낮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인 경우에는 제5-18조제3항을 준용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법 제165조의6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부터 납입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주권상장법인이 전환가액을 하향하여 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생 략)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이하 "최저조정가액"이라 한다), 최저조정가액을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발행사유 및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또는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최저조정가액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조정가액 나. (생 략) 3. (생 략)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주권상장법인이 전환가액을 하향하여 조정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전환사채 발행시 주주총회에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이하 "최저조정가액"이라 한다) 및 해당 사채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조정가액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시가변동 외 증자·주식배당 등주식가치 하락사유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증자·주식배당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하락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 설>	

제5-24조의2(전환주식의 발행) (생 략) <신 설>	제5-24조의2(전환주식의 발행)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은 제5-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전환가액 이상인 것을 말한다.

통 화 명	5월 2일(목)	5월 3일(금)	5월 7일(화)	5월 8일(수)	5월 9일(목)
미 달 러 (USD)	1378.00	1378.50	1365.20	1357.80	1364.40
위 안 화 (CNH)	189.92	190.31	189.55	188.13	188.74
일 본 엔 (JPY)	886.17	899.92	885.83	877.44	877.12
유 로 화 (EUR)	1476.46	1479.06	1469.84	1459.70	1466.53
영 국 파 운 드 (GBP)	1726.84	1728.71	1714.49	1697.59	1704.95
캐 나 다 달 러 (CAD)	1003.53	1008.52	998.65	988.71	994.10
홍 콩 달 러 (HKD)	176.16	176.39	174.62	173.61	174.55

통 화 명	5월 10일(금)	5월 13일(월)	5월 14일(화)	5월 16일(목)	5월 17일(금)
미 달 러 (USD)	1367.90	1367.90	1370.10	1369.00	1349.40
위 안 화 (CNH)	189.20	189.27	189.21	189.08	186.89
일 본 엔 (JPY)	880.53	878.01	876.95	885.37	868.37
유 로 화 (EUR)	1475.21	1473.78	1478.27	1490.70	1466.46
영 국 파 운 드 (GBP)	1713.84	1713.36	1720.50	1736.99	1709.76
캐 나 다 달 러 (CAD)	1000.33	1000.22	1002.30	1006.58	991.00
홍 콩 달 러 (HKD)	175.05	175.04	175.37	175.32	172.97

통 화 명	5월 20일(월)	5월 21일(화)	5월 22일(수)	5월 23일(목)	5월 24일(금)
미 달 러 (USD)	1355.20	1356.20	1364.40	1363.10	1364.50
위 안 화 (CNH)	187.54	187.49	188.36	188.01	187.91
일 본 엔 (JPY)	870.25	867.83	873.24	869.63	869.14
유 로 화 (EUR)	1473.44	1472.97	1481.33	1475.69	1475.43
영 국 파 운 드 (GBP)	1721.51	1723.80	1734.43	1734.07	1732.30
캐 나 다 달 러 (CAD)	995.81	995.52	1000.37	995.80	993.77
홍 콩 달 러 (HKD)	173.68	173.90	174.83	174.67	174.74

통 화 명	5월 27일(월)	5월 28일(화)	5월 29일(수)	5월 30일(목)
미 달 러 (USD)	1370.00	1365.40	1359.50	1364.80
위 안 화 (CNH)	188.82	188.15	187.21	187.77
일 본 엔 (JPY)	873.42	870.10	864.71	865.63
유 로 화 (EUR)	1486.31	1482.76	1475.81	1474.05
영 국 파 운 드 (GBP)	1745.38	1743.62	1734.59	1732.89
캐 나 다 달 러 (CAD)	1002.49	1001.69	996.23	994.72
홍 콩 달 러 (HKD)	175.37	174.89	174.05	174.66

※ 상기의 기준·재정환율은 금융결제원의 자회사인 (주)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외화외상매출의 회계반영, 결산평가와 부가세영세율 과세표준계산시 적용됩니다.

※ (주)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http : //www.smbs.biz, 전화 : 3705-5500)에서 당일의 기준환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